현안분석 2002-6

디지털경제법제④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및 입법론적 검토

鄭 燦 亨

한국법제연구원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및 입법론적 검토

Legal Problems and Legislative Study on Electronic Fund Transfer

研究者 : 鄭燦亨(고려대 법대 교수)
Chung, Chan-Hyung

2002.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 1 장 序 言 7

제 2 장 電子資金移替의 意義 13

제 1 절 定 義 13

제 2 절 類似制度와의 關係 16

1. 資金移替와의 關係 16

2. Giro制度와의 關係 17

제 3 장 電子資金移替의 種類 19

제 1 절 大量移替를 위한 電子資金移替制度 19

제 2 절 消費者가 利用하는 電子資金移替制度 19

제 4 장 美國 統一商法典 第4A章上 資金移替의 法律關係 23

제 1 절 序 言 23

제 2 절 지급지시의 발행과 승낙 24

1. 지급지시의 발행 및 수령시기 24

2. 지급지시의 승낙 25

3. 지급지시의 거절 28

4. 승낙되지 않은 지급지시에 관한 수신은행의 의무와 책임 29

제 3 절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에 의한
지급지시의 집행 30

1. 집행과 집행일 30

2. 지급지시의 집행과 관련한 수신은행의 의무 ····· 31
제 4 절 지 급 ····· 33
1. 지급일 ····· 33
2. 수신은행에 대한 발신인의 지급의무 ····· 33
3. 수취인의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통지 및 지급의무 ····· 36
4. 지급의뢰인의 수취인에 대한 지급(기본채무의 이행) ····· 38
제 5 장 UNCITRAL Model Law上 資金移替의 法律關係 ····· 39
제 1 절 序 言 ····· 39
제 2 절 지급지시의 발행과 승낙 ····· 39
1. 지급지시의 발행 및 수령시기 ····· 39
2. 지급지시의 승낙 ····· 40
3. 지급지시의 거절 ····· 41
제 3 절 지급지시를 승낙한 은행의 의무 ····· 42
1.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의 의무 ····· 42
2. 수취인의 은행의 의무 ····· 43
제 4 절 지 급 ····· 43
제 6 장 電子資金移替의 法律問題 ····· 45
제 1 절 資金移替의 效力發生時期 ····· 45
1. 통일상법전 제4A장 ····· 45
2. UNCITRAL Model Law ····· 47
제 2 절 支給指示의 取消와 修正 ····· 47
1. 통일상법전 제4A장 ····· 47
2. 전자자금이체법 ····· 49

3. UNCITRAL Model Law ····· 50

제 3 절 無權限 資金移替(不正資金移替) ····· 51

1. 통일상법전 제4A장 ····· 51

2. 전자자금이체법 ····· 55

3. UNCITRAL Model Law ····· 56

제 4 절 誤謬資金移替 ····· 56

1. 통일상법전 제4A장 ····· 56

2. 전자자금이체법 ····· 62

3. UNCITRAL Model Law ····· 65

제 5 절 支給指示의 履行遲滯, 부적절한 履行 또는
不履行에 대한 責任 ····· 66

1. 통일상법전 제4A장 ····· 66

2. 전자자금이체법 ····· 67

3. UNCITRAL Model Law ····· 69

제 7 장 結 語 ····· 71

제 1 절 電子資金移替法의 必要性 ····· 71

제 2 절 電子資金移替法(案) ····· 72

참고문헌 ····· 91

제 1 장 序 言

(1) 오늘날 지급수단으로는 현금 외에도 수표·직불카드와 신용카드 및 전자자금이체 등에 의한 지급제도가 있다.[1] 이 중에서 금융기관 등의 컴퓨터에 의한 새로운 지급제도인 전자자금이체제도는 오늘날의 컴퓨터혁명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2] 오늘날 각종 금융기관은 사람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서면지급제도(paper-based payment system)에서 오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최신 컴퓨터 기술을 사용한 전자자금이체에 의하여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고객에 대한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3] 이러한 전자자금이체제도는 채권의 증권화경향을 둔화시켜 증권의 가치권화라는 새로운 경향을 생기게 하여, 무체의 채권을 유체화시켰던 증권을 다시 창부상의 권리로 변화시키고 있다.[4] 따라서 수표의 출현으로 현금의 이용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같이, 전자자금이체제도의 출현으로 수표의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오늘날 「수표 없는 사회」(checkless society)가 매우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고 표현하는 견해도 있으나, 수표의 출현으로 현금의 이용이 없어지지 않은 것과 같이 전자자금이체제도에 의한 새로운 지급제도의 출현으로 수표의 이용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수표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수표에 의한 지급제도는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지급제도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다.[5][6]

---

1) Nan S. Ellis, "The Uniform New Payments Code : Highlights of Proposed Changes in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s 3 and 4", 23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617(1986).

2) Linda S. Hume, *Payment Systems*(Problems and Materials)(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Autumn 1988), at 21.

3) 例컨대 美國에서 自動出納機(ATM) 이용과 창구직원을 이용할 경우의 그 채산성을 비교한 것에 의하면, 自動出納機 이용건수가 월 5,600건에 이르면 거래 한 건당 취급비용은 45센트로서 창구직원을 고용해 처리한 것과 같은 비용이 드나, 이용건수가 그 이상이면 自動出納機 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全國銀行聯合會, 「美·日의 金融自由化와 銀行經營」, 1986, 184~185쪽).

4) 鄭熙喆, "Giro制度가 有價證券制度에 미치는 影響", 「法學」(서울大), 제26권 1호(1985.4), 1쪽.

5) 同旨 : James V. Vergari, "Article 3 and 4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in an Electronic Fund Transfer Environment", 17 *Sandiego Law*

(2) 우리 나라의 경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각 금융기관을 통한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지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소액결제시스템[7]에 의한 우리 나라의 지급결제동향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 장표방식(어음·수표, 지로 일반이체)에 대한 전자방식(은행공동망, 지로 자동이체·대량지급, 은행계 신용카드)의 비율이 1998년 47.9%이었으나 1999년에는 52.6%로 장표방식을 앞서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58.3%, 2001년에는 63.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직까지 장표방식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전자방식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8] 한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의 이용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 6월말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및 우체국에 등록된 고객수는 1,448만명으로 2001년 말 1,131만명에 비해 6개월간 28%나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기업고객은 53만으로 2001년말 39만 4천에 비해 34.5%나 증가하였다.[9]

Review 288(1980); Douglas J. Whaley, *Problems and Materials on Negotiable Instruments* (Little, Brown & Co., 1981), at 371.

6) 鄭燦亨, "電子資金移替制度", 「韓國金融法硏究」, 제4집(1991), 289~290쪽; 同, 「第3改訂版 어음·手票法講義」(서울 : 弘文社, 1999), 687쪽.

7) 결제시스템은 시스템의 성격 및 처리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량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어음교환제도, 은행지로제도와 타행환공동망, CD/ATM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등 은행공동망이 있다. 한편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한 계좌이체는 현재 동일 은행내 지점계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은행간 결제시스템으로는 볼 수 없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은행간 결제시스템이 없는데 은행계 카드는 카드회사가 매일의 은행간 결제차액을 계산하면 각 은행이 이를 어음교환에 회부·결제하고 있으며, 전문회사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의 거래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http://bok.or.kr/bokis/bokis/html_view?i_current=00000667).

8) http://bok.or.kr/bokis_attach/1102022001sat.xls.

(단위 :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건수기준	장표방식	52.1	47.4	41.7	36.4
	전자방식	47.9	52.6	58.3	63.6
금액기준	장표방식	85.1	84.3	74.9	68.1
	전자방식	14.9	15.7	25.1	31.9

9) 한국은행, "2002. 6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보도자료」, 2002.7.

(3) 전자자금이체제도는 금융기관 및 고객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에 예기치 않았던 아주 새로운 법률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컨대 販賣店頭端末機(Point-of-Sale Terminal, POS) 등에 의한 지급거래에서는 지급절차가 개시됨과 거의 동시에 결제가 완료된다는 장점도 있으나, 수표나 신용카드에서와는 달리 직불카드의 이용시점과 대금결제시점의 사이에 시차가 없기 때문에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관계에 의한 항변을 주장할 수 없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단점도 있다. 또한 자동교환소(Automation Clearing House, ACH)를 통한 전기요금 등의 차변이체의 경우 이용자는 전기회사의 수금원에 대하여 직접 현금 등을 지급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또 전기회사도 다수의 수금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어떠한 이유로 전기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이용자의 예금계좌로부터 借記된 경우에는 과오납금액을 돌려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10]

이와 같이 전자자금이체거래에서는 새로운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ⅰ) 전자자금이체거래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의 자금이체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어떠한지의 문제, ⅱ) 언제 자금이체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지의 문제, ⅲ) 지급지시 이후에 동 지급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만약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의 문제, ⅳ)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무권한 자금이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책임문제, ⅴ) 과소 또는 과다이체, 수취인 기재오류, 이중지급지시 등 오류자금이체에 따른 당사자간의 책임문제, ⅵ) 금융기관의 자금이체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문제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고객수

(단위 : 만명, 만개)

	2001. 6월말	2001. 12월말	2002. 3월말	2002. 6월말
개인	719	1,092	1,192	1,395
기업	24	39	49	53
합계	743	1,131	1,241	1,448

10) 한국외환은행, 「새로운 은행업무와 법률문제」(법규자료: 조법-47), 1984.5.31, 15쪽.

그러나 이러한 법률문제는 서면자금이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의 민사법이나 어음법·수표법의 유추적용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는 거의 은행 등이 제정한 약관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을 뿐이며, 전자자금이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금융결제원이 제정한 지로업무규약·지로업무시행세칙 등이 있는 정도이어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형평에 맞게 조화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전자자금이체의 의의와 종류를 소개한 후, 위의 문제점에 관하여 미국의 통일상법전[11](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 약칭함) 및 전자자금이체법[12](Electronic Fund Trans-

---

11) 미국에서는 연방법인 전자자금이체법의 적용범위가 소비자 보호 등에 한정되어 있고 統一新支給法(Uniform New Payment Code)의 제정이 보류됨에 따라, 1985년 통일주법위원회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산하에 전자결제에 관한 법개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동 위원회의 입법활동으로 1989년 통일상법전에 새로이 자금이체에 관한 규정(5절 38조문)인 제4A장이 추가되었다. 전자자금이체법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 신용보호법의 제9편으로 추가된 입법으로서 특수한 분야에 적용되는 정책법규임을 고려할 때, 통일상법전 제4A장은 자금이체거래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同旨: 鄭敬永, "미국 통일상법전 4A편상의 지급지시에 관한 연구", 「현대상법의 과제와 전망」(松淵梁承圭敎授華甲記念)(서울 : 三知院, 1994), 513쪽).

12) 미국 의회는 전자자금이체의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4년에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lectronic Fund Transfer)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2년 동안 2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아 전자자금이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1977년 10월에 대통령 및 의회에 「금융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은 그 제정시에 전자자금이체를 예상치 못하였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의회가 전자자금이체제도의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연방입법을 제정할 것을 제언한다」고 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의회는 이 권고안에 따라 1978년 11월 10일에 「금융기관규칙 및 이율규제법」(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Interest Rate Control Act)의 일부(Title XX, § 2001)로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하였다(Joe Tauber, "The Emergence of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 Consumer Protection, Federal Antitrust, and Branch Banking Laws", 10 *Ohio N.U.L. Rev.* 323 n. 6).

이 법의 규정 중 무권이체의 소비자책임에 관한 규정(15 U.S.C. § 1693 g (Supp. Ⅳ 1980))과 신용카드의 발행에 관한 규정(15 U.S.C. § 1693 i (Supp. Ⅳ 1980))은 1979년 2월 8일(제정일로부터 90일 경과 후)부터 발효하고, 기타 규정들은 1980년 5월 10일(제정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부터 발효하였다.

이 법을 보충하기 위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는 동법 제1693b조에 근거하여 규칙 E(Regulation E)(12 C.

fer Act, 15 U.S.C. §§1693-1693r)과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모범법[13](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 이하 'UNCITRAL Model Law'로 약칭함)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관한 우리 나라에서의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F.R. §205, 1-14(1982))를 제정하였다.
전자자금이체법은 소비자(자연인)의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전자자금이체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일정한 범위의 전자자금이체거래에만 적용된다(이 점은 신용카드에 관한 소비자신용보호법의 규정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전자자금이체법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자동출납기거래·판매점두단말기거래·자동교환소에 의한 대변이체거래(직접예치) 또는 차변이체거래(既授權 借記)·전화청구서지급거래에만 적용되고, 주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 의하여 이용되는 Fed Wire 이체·고객의 계좌를 직접 借記하거나 貸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수표보증·동일은행에 있는 동일인의 계좌 상호간의 자동이체·既授權이 없거나 청구서지급이 아닌 전화이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Hume, *supra* at 22).

13)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1986년 7월에 「전자자금거래에 관한 법지침」(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s Transfer)을 제정하고, 1992년 5월에 UNCITRAL Model Law를 만들어 각국에 채택을 권유하고 있다.

제 2 장 電子資金移替의 意義

제 1 절 定 義

(1)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의뢰를 자기테이프에 기록해서 하거나 또는 기타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하는 자금이체」를 말하는데,[14] 지급의뢰를 서면에 의하여 하는 서면자금이체와 구별된다. 이러한 전자자금이체제도는 대형컴퓨터의 사용으로 다량의 기장과 증권에 의한 기능이 완전자동으로 처리되는 제도로서, 원래는 은행이 대량의 수표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을 감소시켜 능률을 제고하고 이러한 수표를 처리하는 창구와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은행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15] 그런데 현재 이 제도는 은행의 예금·추심 및 어음·수표 등의 증권에 의한 지급기능의 대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16]

이 제도가 모든 지급증권의 대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는 소비자에 의한 이 제도의 이용정도에 달려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 제도의 이용으로 인한 법률문제의 모호와 불확실 때문에 이 제도의 이용을 꺼려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증권에 의한 지급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보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7]

우리 나라에서의 전자자금이체는 은행·우체국 등의 실무에서 자동이체, 자동이체처리 또는 자동대체처리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18]

(2)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4A장은 전자자금이체만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서면자금이체를 포함하는 자금이체(funds transfer)를 정의하고

---

14) Benjamin Geva, "The Concept of Payment Mechanism", 24: 1 *Osgoode Hall Law Journal* 3-6(1986).

15) Joe Tauber, "The Emergence of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Consumer Protection, Federal Antitrust, and Branch Banking Laws", 10 *Ohio Northern University L. Rev.* 323, 323 n.3(1983).

16) Henry J. Bailey, *Brady on Bank Checks*, § 11.17(5th ed., 1979).

17) Tauber, *supra* 10 Ohio N.U.L.Rev. 323; Vergri, *supra* 17 Sandiego Law Review 288 (1980).

18) 鄭燦亨, 前揭 어음·手票法講義, 688~689쪽; 鄭東潤, 「어음·手票法(四訂版)」(서울: 法文社, 1996), 712쪽.

있다. 즉 자금이체(funds transfer)란 「지급지시(지급의뢰)(payment order)상의 수취인(beneficiary)[19]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지급의뢰인(채무자)(originator)[20]의 지급지시로써 개시되는 일련의 처리를 말하는데, 이 때의 지급지시는 지급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최초의 지급의뢰인의 은행(originator's bank)[21] 또는 중개은행(intermediary bank)[22]이 한 어떠한 지급지시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금이체는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을 위하여 수취인의 은행(beneficiary's bank)[23]이 그 지급지시를 승낙함으로서 완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U.C.C. §4A-104(a)].

또한 자금이체에서 말하는 지급지시는 「발신인(sender)[24]이 수신은행(receiving bank)[25]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일정액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구두·전자식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지시를 말하는데, 이러한 지급지시는 ⅰ) 지급시기 이외에 수취인에 대한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ⅱ) 수신은행은 발신인계좌에서 借記하거나 또는 발신인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상환받게 되며, ⅲ) 그 지시는 발신인에 의해 직접 수신은행에 전달되거나 수신은행에 대한 전달을 목적으로 수신

19) "수취인"(beneficiary)이란 수취인의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U.C.C. §4A-103(a)(2)).

20) "지급의뢰인"(originator)이란 자금이체에서 최초의 지급지시를 발송하는 자(발신인)(sender)를 말한다(U.C.C. §4A-104(c)).

21) "지급의뢰인의 은행"(originator's bank)이란 ⅰ) 지급의뢰인이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의뢰인이 한 지급지시의 수신은행이고, ⅱ) 지급의뢰인이 은행인 경우에는 지급의뢰인을 말한다(U.C.C. §4A-104(d)).

22) "중개은행"(intermediary bank)이란 지급의뢰인의 은행이나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을 말한다(U.C.C. §4A-104(b)).

23) "수취인의 은행"(beneficiary's bank)이란 지급지시에 따라 貸記될 수 있는 수취인의 계좌가 있는 지급지시에서 특정된 은행 또는 지급지시가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은행을 말한다(U.C.C. §4A-103(a)(3)).

24) "발신인"(sender)이란 수신은행에 지시(instruction)를 보내는 자를 말한다(U.C.C. §4A-103(a)(5)).

25) "수신은행"(receiving bank)이란 발신인의 지시를 받는 은행을 말한다(U.C.C. §4A-103(a)(4)).

은행의 대리인·자금이체시스템 또는 통신시스템에 전달된다」고 정의하고 있다[U.C.C. §4A-103(a)(1)].

(3)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15 U.S.C. §§1693-1693r)은 통일상법전 제4A장과는 달리 전자자금이체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전자자금이체란 「수표·환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증권에 의한 거래 이외의 자금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자단말기(electronic terminal)·전화기기(telephonic instrument)·컴퓨터 또는 자기테이프가 금융기관에 계좌의 借記나 貸記를 지시하거나 수권하여 이체되는 것으로서, 이에는 販賣店頭移替(point-of-sale transfer)·자동출납기거래(automated teller machine transaction)·자금의 직접예치나 인출 및 전화에 의한 이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i) 소비자의 계좌에 직접적으로 借記나 貸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수표보증이나 授權用役(authorization service), ii) 금융기관이 소비자에 대신하여 연방준비은행이나 기타 예금기관에 있는 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서, 자동교환소에 의하지 않고 또 제1차적으로 소비자에 대신하여 이체할 목적이 아닌 어떠한 형태의 자금이체, iii) 거래의 제1차적인 목적이 증권 또는 상품의 매매인 거래로서 등록된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되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하여 규율되는 어떠한 형태의 거래, iv) 소비자와 금융기관간의 약정으로 대월을 상환하거나 소비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합의된 최저액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저축예금계좌에서 요구불예금계좌로 이체하는 어떠한 형태의 자동이체, v)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임직원간의 전화대화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자금이체로서, 既約定計劃에 따르지 않고 또 정기 또는 반복적이 아닌 자금이체」라고 정의하고 있다(15 U.S.C. §1693 a⑥).

(4) UNCITRAL Model Law에서는 지급이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지급이체(credit transfer)란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를 시작으로 수취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자금이체의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지급이체의 용어는 지급의뢰인의 은행이나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를 수행하는 모든 중개은행이 한 어떠한 형태의 지

급지시를 포함한다. 그러한 지급지시에 대하여 지급할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지급지시도 지급이체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정의하고 있다[UNCITRAL Model Law §2(a)].

제 2 절 類似制度와의 關係

1. 資金移替와의 關係

자금의 지급은 원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금을 현실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의 지급방법은 채무자의 수중에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을 것과 채권자에게 이러한 현금을 현실로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중에 현금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에게 현금을 현실로 인도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경하기 위하여 자금의 지급구조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금의 지급구조는 2당사자간의 지급구조에서 3당사자간의 지급구조로 발전하게 된 것인데, 3당사자간의 지급구조에서 특히 제3자가 은행이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에서 借記하여 채권자의 계좌에 貸記함으로써 자금의 지급은 간단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전형적인 지급구조이다.[26]

이러한 자금이체는 지급의뢰수단에 따라 「서면자금이체(paper-based fund transfer)」와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하여 이체내용에 따라 「대변이체(또는 지급이체, credit transfer)」와 「차변이체(또는 추심이체, debit transfer)」가 있다. 대변이체는 채무자가 직접 은행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자금을 貸記하도록 의뢰하는 것이고, 차변이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권받아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借記하여 자기의 계좌에 貸記하도록 의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변이체와 차변이체는 이체의뢰의 이니셔티브

26) 이와 같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자금이체를 單一銀行間移替(one-bank transfer)라고 하는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2銀行間移替(two-bank transfer)(두 은행이 거래관계가 있거나 또는 공통된 어음교환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또는 3銀行間移替(three-bank transfer)(두 은행이 직접 거래관계가 없거나 공통한 어음교환소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양 은행의 중간에 거래관계가 있는 제3의 은행을 매개로 하여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게 된다(鄭東潤, 前揭書, 703쪽).

를 債務者가 갖고 있느냐 또는 債權者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라고 볼 수 있다.[27]

전자자금이체란 위와 같은 자금이체의 일종인데, 다만 그 지급의뢰수단이 (그것이 대변이체이든 차변이체이든) 자기테이프에 기록해서 하거나 또는 기타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하는 자금이체를 말한다. 이러한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지급제도는 오늘날 은행 등에 의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28]

2. Giro制度와의 關係

Giro제도는 중앙대체기관(Giro Center)에 설정된 은행이나 우체국의 계좌를 통하여 또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채무자(지급의뢰인)와 채권자(수취인)간의 각종 자금거래를 장부상의 자금이체방식으로 결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29] 따라서 Giro제도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하여 하는 은행Giro[30]와, 증권회사를 통하여 하는 증권Giro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앙대체기관은 은행지로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증권Giro(증권대체결제)의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다.

이러한 지로제도 중 은행지로만이 「현금 없는 대체거래」로서 자금이체와 관련되고 있다. 그런데 자금이체가 대변이체이든 또는 차변이체이든, 서면자금이체이든 또는 전자자금이체이든, i) 채권자가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ii) 채무자의 지급의뢰가 증권에 의하지 않은 지급제도를 Giro제도라고 한다.[31] 따라서 은행지로는 서면지시에 근거하거나 자기테이프의 지시에 근거한 현금이체제도라고 볼 수 있다.[32]

---

27) 同旨 : 鄭東潤, 前揭書, 708쪽; 崔基元, 「어음·手票法」(서울: 博英社, 1996), 831쪽.

28) 鄭燦亨, 前揭 韓國金融法硏究, 293~294쪽.

29) 鄭熙喆, 前揭論文, 2쪽.

30) 당초 우체국에서는 은행지로제도와 유사한 우편지로·자동계좌이체 및 체신지로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4년 12월 우체국이 은행지로사업에 특별 참가함에 따라 우편지로 및 자동계좌이체업무는 은행지로업무에 편입되고 1995년 6월부터 우체국에서는 체신지로업무만 취급하고 있다(한국은행, 「우리 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0.2, 76쪽).

31) Geva, *supra* at 7.

32) Giro 制度와 電子資金移體와의 관계에 관한 상세는 E. P. Ellinger, "The Giro

이렇게 보면 은행지로는 자금이체보다는 좁은 개념이고, 전자자금이체나 대변이체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생각된다.[33] 즉, Giro제도 중에서는 자기테이프의 지시에 근거한 은행지로만이 전자자금이체라고 볼 수 있다.[34]

System and Electronic Transfers of Funds",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178-217(May, 1986) 참조.

33)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資金移體의 의미로 Giro 制度(또는 銀行Giro 制度)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견해도 있고(崔基元, 前揭書, 831쪽), 貨證移體의 의미로 Giro制度(특히 銀行Giro)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견해도 있다(鄭東潤, 前揭書, 702쪽).

34) 鄭燦亨, 前揭 韓國金融法硏究, 294~295쪽; 同, 前揭 어음·手票法講義, 690쪽.

제 3 장 電子資金移替의 種類

제 1 절 大量移替를 위한 電子資金移替制度

미국에서 주로 은행간의 대량의 자금이체를 위한 전자자금이체제도로는 Fed Wire(연방준비제도 전신망), Bank Wire(은행전신망), CHIPS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어음교환소은행간 지급제도),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ransactions, 전세계은행간금융거래협회) 등이 있다. Fed Wire는 연방준비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간의 자금이체에 이용되고, Bank Wire는 다수의 은행이 공동출자한 법인을 통한 은행간의 자금이체에 이용되고, CHIPS는 뉴욕연방준비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간의 자금이체에 이용되며, SWIFT는 국제은행간의 데이터 통신시스템으로서 이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이체에 이용된다.[35]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각 은행의 어음교환결제자금의 이체가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전자자금이체로 시행되고 있다. 즉,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금융기관간 거액자금거래를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건별로 즉시 결제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이 1994년 12월부터 구축·가동되고 있는데,[36] 이는 미국의 Fed Wire에 유사한 대량이체를 위한 전자자금이체제도라고 볼 수 있다.[37]

제 2 절 消費者가 利用하는 電子資金移替制度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자자금이체제도로는 자동출납기(Automated Teller Machines, ATM), 販賣店頭端末機(Point-of-Sale Terminal,

35) 이 중 CHIPS와 SWIFT에 관한 상세한 論文으로는 Herbert F. Lingl, "Risk Allocation in International Interbank Electronic Fund Transfers: CHIPS & SWIFT", 22:3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621-661(Fall, 1981).

36) 한국은행, 前揭書(주 30), 109쪽.

37) 鄭燦亨, 前揭 어음·手票法講義, 691쪽.

POS), 자동교환소(Automated Clearing House, ACH)를 통한 자금이체거래 등이 있다.[38]

(1) 자동출납기는 소비자(고객)에게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어 24시간 은행 창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비자가 자기로 코드화한 플라스틱카드를 동 기계에 넣고 신분확인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로 불려지는 비밀번호를 누르면 입금·계좌간 이체·현금인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비자에게 현재의 잔액을 알려준다.[39] 자동출납기와 비교하여 현금인출의 기능만을 하는 컴퓨터를 현금자동인출기(Cash Dispenser, CD)라고 한다. 이러한 거래는 즉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시간(float time)」[40]이 허용되는 수표나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과 구별된다. 따라서 수표나 신용카드에서 가능한 유동시간 내에서의 지급정지나 항변의 주장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41]

(2) 판매점두단말기는 소비자가 상점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용되는데, 소비자와 상점이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이 발행한 플라스틱카드[42]를 동 기계에 넣고 그의 비밀번호를 누르면 은행의 컴퓨터가 소비자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확인한 후 소비자의 계좌를 借記하여 상점의 계좌에 貸記하여 준다. 만일 소비자와 상점의 계좌가 다른 은행에 있는 경우에는 은행간의 자금이체를 수반한다. 소비자가 이러한 판매점두단말기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물건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현금·수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43]

---

38) Mark E. Budnitz, "Federal Regulation of Consumer Disputes in Computer Banking Transactions", 20 : 3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35-37(1983).

39) 美國에서의 自動出納機에 관한 각종 통계로는 全國銀行聯合會, 前揭書(주 3), 183~187쪽 참조.

40) 「流動時間」이란 수표의 발행시 또는 신용카드의 사용시와 수표계좌에서 실제로 수표금액이 借記되거나 신용카드계좌에서 카드사용금액이 지급되는 시와의 사이에 있는 지체시간이다.

41) 鄭燦亨, 前揭 韓國金融法硏究, 296~297쪽; 同, 前揭 어음·手票法講義, 691~692쪽.

42) 이 카드를 직불카드(debit card)라고 부르는데, 이 카드는 信用카드(credit card)와 유사하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信用카드와 직불카드가 同一카드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Budnitz, supra at 35).

43) Budnitz, supra at 35-36; 鄭燦亨, 前揭 韓國金融法硏究, 297쪽; 同, 前揭 어

(3) 자동교환소[44]를 통한 자금이체거래에는 대변이체(直接預置制度)와 차변이체(既授權借記制度)가 있다.

i) 대변이체는 월급·私的 연금·국가의 사회보장연금·배당금을 직접 수혜자(개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예컨대 기업주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직원의 월급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의 성명·그의 거래은행 및 동 은행에 입금되어야 할 월급액 등을 기록한 자기테이프를 준비하여, 이 테이프를 자기의 거래은행에 송부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다. 기업주의 거래은행은 위 테이프를 자동교환소에 송부하는데, 동 교환소는 송부된 자기테이프를 가지고 각 직원에 대한 자기테이프 또는 인쇄용지를 준비한다. 그 후 월급일에 기업주의 계좌를 借記하여 직원의 계좌에 貸記하는 것이다.[45]

ii) 차변이체는 소비자가 자기의 거래은행에게 일정한 채권자의 청구서의 금액을 자기의 계좌에서 借記하여 지급하도록 수권하는 거래로서, 소비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 즉 집세·보험료·공과금 등을 지급한다. 소비자의 거래은행은 소비자의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면, 동 은행은 소비자의 계좌에서 청구금액을 借記하고 이를 나타내는 자료를 자동교환소에 송부하는데, 동 교환소는 이 자료에 의하여 동 자금을 채권자의 은행에 이체하여 준다. 이러한 차변이체는 전화청구서지급(Telephone Bill-Paying, TBP)과 유사한데, 자동교환소를 통한 차변이체는 소비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청구서를 받아 직접 소비자의 계좌를 借記하여 지급함에 반하여, 전화청구서지급은 소비자가 지급청구서를 수령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전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화청구서지급의 경우에도 은행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전신전화(touchtone telephone)의 경우

음·手票法講義, 692쪽.

44) 우리 나라의 금융결제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美國에는 33개의 지역 自動交換所가 있는데, 이는 전국 自動交換所協會와 연결되어 있으며(Hume, supra at 21), 이러한 自動交換所는 1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聯邦準備銀行에 의하여 소유·운영되고 있다(Budnitz, supra at 36).

45) Budnitz, *supra* at 36; 鄭燦亨, 前揭 韓國金融法硏究, 297~298쪽; 同, 前揭 어음·手票法講義, 692쪽.

에는 대화할 필요 없이 컴퓨터에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46]

ⅲ) 자동교환소는 증권인 수표 없이 지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자동교환소는 수표 없는 지급기능 외에 수표를 보완하는 기능도 한다. 수표를 보완하는 기능이란 수표요건 중 중요한 부분을 전산자료화하여 이를 지급제시에 갈음하는 것인데, 이를 手票要約化(check truncation)라 한다. 이러한 수표요약화제도는 수표와 증권 없는 전자자금이체 사이의 혼합물인데, 이 제도에 의하여 수표의 교환시간은 훨씬 단축되고 있다.[47]

46) Budnitz, *supra* at 36-37. 鄭燦亨, 前揭 韓國金融法硏究, 298쪽; 同, 前揭 어음·手票法講義, 692~693쪽.

47) 鄭燦亨, 前揭 韓國金融法硏究, 298~299쪽; 同, 前揭 어음·手票法講義, 693쪽; 鄭東潤, 前揭書, 716쪽.

제 4 장 美國 統一商法典 第4A章上 資金移替의 法律關係

제 1 절 序 言

(1) 미국 통일상법전 제4A장상 전형적인 자금이체거래의 당사자는 지급의뢰인(originator), 지급의뢰인의 은행(originator's bank), 중개은행(intermediary bank), 수취인의 은행(beneficiary's bank) 및 수취인(beneficiary)인데, 이 중 수취인을 제외한 이들 각 당사자는 지급지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신인(sender) 또는 수신은행(receiving bank)으로 활동한다. 즉 지급의뢰인은 지급의뢰인의 은행에 대한 지급지시의 발신인이고, 수취인의 은행은 중개은행에 대한 지급지시의 수신은행이다. 지급의뢰인의 은행 및 중개은행의 경우 발신인이면서 동시에 수신은행에 해당되게 되는데, 지급의뢰인의 은행(중개은행)은 지급의뢰인(중개은행의 경우 지급의뢰인의 은행)에 대한 지급지시의 수신은행이고, 중개은행(중개은행의 경우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지급지시의 발신인이다. 이러한 관계를 圖示하면 아래와 같은데, 이는 단일은행간이체[48]·2은행간이체 및 1개 이상의 중개은행이 존재하는 이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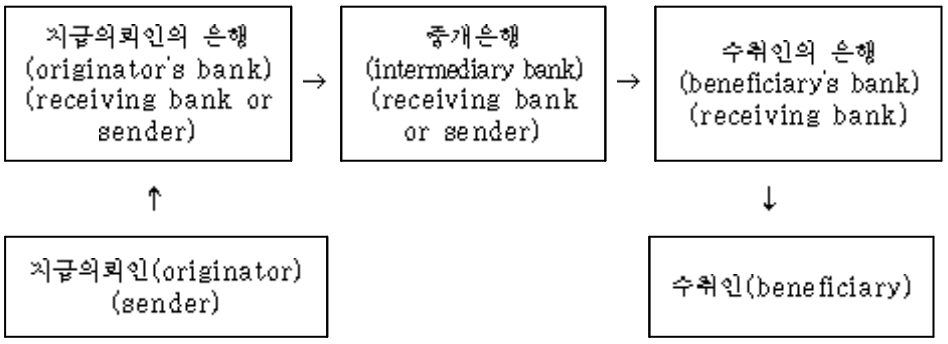

48) 통일상법전 제4A장은 독립된 영업소를 별개의 은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U.C.C. §4A-105(a)(2)), 대부분의 경우 단일은행간 이체의 경우에도 2 은행간 이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동일은행의 동일영업소에서 자금이체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은행이 지급의뢰인의 은행, 수신은행 및 수취인의 은행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다.

통일상법전 제4A장은 5개의 절로 나뉘어 규정되고 있는데, 제1절은 「적용대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제2절은 유효한 지급지시가 무엇이며 이의 승낙의 효과에 관한 「지급지시의 발행과 승낙」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절은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집행하는 문제인 「수신은행에 의한 발신인의 지급지시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4절은 각 당사자의 자금이체에 따른 지급의 문제인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절은 기타 사항에 관한 「보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핵심사항은 제2절·제3절 및 제4절의 내용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순서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미국 통일상법전 제4A장은 1978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전자자금이체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자금이체에는 적용되지 않고[U.C.C. §4A-108],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감독규정 및 연방준비은행의 운영세칙과 저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동 감독규정 및 운영세칙이 우선한다[U.C.C. §4A-107].

제 2 절 지급지시의 발행과 승낙

1. 지급지시의 발행 및 수령시기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지시는 발신인이 수신은행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일정액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구두·전자식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지시를 말한다. 최초의 지급지시는 대부분의 경우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할 것이나, 통일상법전 제4A장은 그 원인관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수신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는 발신인으로 확인된 자가 그 지시를 수권하거나 그밖에 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지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수권된 정당한 지급지시가 된다[U.C.C. §4A-202(a)]. 발신인으로 확인된 자가 수권하지 않은 지급지시는 무권한 자금이체에 관한 문제로 후술한다.

(2) 지급지시 및 지급지시의 취소·수정통지의 수령시기는 통일상법전 제1-201조 제27항[49]에 규정된 통지의 수령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수신은행은 지급지시의 수령·처리와 지급지시의 취소·수정통지의 수령·처리를 위하여 자금이체 영업일의 마감시간(cut-off time)을 고정할 수도 있고, 지급지시나 지급지시의 취소·수정에 대하여 또는 다른 부류의 지급지시나 지급지시의 취소·수정에 대하여 다른 마감시간을 정할 수도 있다. 동일한 마감시간이 일반적으로는 발신인에게 적용되는데, 다른 마감시간이 다른 발신인이나 지급지시의 부류별로 적용될 수도 있다. 지급지시 및 지급지시의 취소·수정통지가 자금이체 영업일 종료 후 또는 자금이체 영업일의 유효한 마감시간 이후에 수령되었을 경우, 수신은행은 그 지급지시나 통지를 다음 자금이체 영업일을 시작할 때 수령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U.C.C. §4A-106(a)].

2. 지급지시의 승낙

(1) 지급지시의 승낙은 수신은행이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발신인에 대하여, 수신은행이 수취인의 은행인 경우에는 수취인에 대하여 지급지시의 이행과 관련한 의무를 부담한다. 즉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한 경우에는 집행일에 발신인의 지급지시와 일치하는 지급지시를 하는 등 발신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 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한 경우에는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에게 지시금액의 지급·지급지시의 수령통지 등의 의무가 있다[U.C.C. §4A-302, §4A-404]. 따라서 이들에게는 승낙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통일상법전 제4A장은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수신은행과 수취인의 은행의 경우로 나누어 승낙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49) 미국 통일상법전 제1-201조 제27항은 단체에 대한 통지(notice)의 유효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단체가 통지를 수령하면, 동 통지는 그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이 인지(attention)하는 때부터 그 거래에 대하여 유효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만일 그 단체가 정당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due diligence) 그 개인이 인지할 수 있었을 때부터 유효하다. 이 때 단체가 그 거래를 수행하는 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상당한 일상의 일을 하고(maintain reasonable routines) 또 그 일상의 일에 상당히 일치함이 있으면, 그 단체는 정당하게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가) 먼저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은 지급지시를 집행할 때, 즉 자신이 받은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도로 지급지시를 할 때 승낙한 것으로 된다[U.C.C. §4A-209(a)]. 따라서 승낙의 효과는 수신은행이 발신인의 지급지시와 일치하는 지급지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수신은행의 지급지시가 실질적으로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예컨대 지시금액의 기재오류, 잘못된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지급지시 등),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도로 지급지시를 하는 순간에 발신인의 지급지시는 수신은행에 의하여 승낙된 것이다[Official Comment 2 to U.C.C. §4A-209].

나) 다음으로 수취인의 은행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으로 된다.

i) 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하거나 동 수취인에게 지급지시의 수령을 통지하거나 동 수취인의 계좌에 지급지시에 관하여 입금하였음을 통지한 시점이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으로 된다. 다만 그 통지가 은행이 지급지시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지급지시의 발신인으로부터 지급을 수령할 때까지는 그 지급지시와 관련된 자금은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발신인이 은행이고 수취인의 은행이 발신인으로부터 연방준비제도나 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최종청산을 함으로써 지급을 받는 경우) 수취인의 은행이 발신인으로부터 지급지시 전액의 지급을 수령한 시점이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으로 된다.

iii) (발신인과 수취인이 동일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고 발신인 계좌에서 借記하여 수취인 계좌에 貸記함으로써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신인의 수권계좌에 있는 인출가능한 예금잔고가 발신인의 지급지시액 전부를 이행하기에 충분하거나 동 은행이 발신인으로부터 달러 지급지시금액의 전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지시상의 지급일에 이은 다음 자금이체 영업일의 개시시점이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으로 된다. 다만 그 지급지시가 그 시간 전에 거절되었거나, 그 시점 이후 1시간 내에 또는 (발신인의 영업시점이 수취인의 은행의 영업시점보다 늦을 때에는) 지급일에 이은 발신인의 다음 영업일의 개시시점 이후 1시간 내에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거절의 통지가 지급일 이후에 발신인에게 도달되고 발신인의 수권계좌가 무이자인 경우, 동 은행은 지급일 이후 발신인이 (거절의) 통지를 받거나 지급지시가 승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른 지급지시액의 이자[50]를 발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발신인이 (거절의) 통지를 받거나 지급지시가 승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 날은 경과일로 계산된다. 그 인출가능한 예금잔고가 당해 기간 중 지급지시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지급가능한 이자액도 그에 따라 감액된다 [U.C.C. §4A-209(b)].

(2)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의 경우에는 지급지시가 집행되는 때에 승낙이 발생하므로 승낙발생여부가 수신은행의 지배하에 있게 됨에 반하여, 수취인의 은행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지시의 수동적인 수령에 의해서도 승낙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발신인의 지급이 Fedwire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은행은 지급지시의 승낙을 방지할 수 없다.[51]

(3) 지급지시의 승낙은 그 지시가 수신은행에 도달되기 전에 발생할 수 없으며, 지급지시의 수취인이 수신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그 계좌가 폐쇄된 경우 또는 수신은행이 법에 의하여 수취인 계좌에 예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1) 나) ii) 또는 iii)에 의한 승낙이 발생하지 않는다[U.C.C. §4A-209(c)]. 또한 지급의뢰인의 은행에 한 지급지시는 그 은행이 수취인의 은행이라면 지급일까지, 그 은행이 수취인의 은행이 아니라면 집행일까지 승낙될 수 없다. 만약 지급의뢰인의 은행이 집행일 전에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하거나 지급일 전에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지시가 집행일 또는

50) 통일상법전 제4A장에서 수신은행이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5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자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데, 동 약정이나 규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연방자금금리에 따르는데 적용가능한 연방자금금리는 각각의 이자지급 가능 날자에 대하여 뉴욕연방준비은행이 공표하는 연방자금금리를 평균하여 360으로 나눈 것이다. 공표된 금리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의 연방자금금리는 공표된 금리가 존재하는 직전일의 공표금리와 같다.

51) Fedwire를 통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받은 시점에 발신인의 연방준비은행 계좌에서 출금되고 수신은행의 연방준비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발신인의 지급의무가 이행된다(Official Comment 1 to U.C.C. §4A-403).

지급일 전에 취소되었다면, 그 은행은 착오 및 원상회복에 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취인으로부터 모든 수령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U.C.C. §4A-209(d)]. 즉 이 경우 조기칩행에 대한 위험부담은 지급의뢰인의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3. 지급지시의 거절

(1)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에 한 지급지시에 관하여는 그 지급지시의 숭낙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절의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신은행은 그 지급지시를 칩행한 경우에 한하여 숭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U.C.C. §4A-209(a)]. 다만 발신인의 계좌가 지급지시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데도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칩행하지 않는다면, 발신인에 대한 이자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절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그러나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지급지시는 동 은행의 부작위에 의해서 숭낙될 수 있으므로[U.C.C. §4A-209(b)(2)(3)], 이러한 규정상의 숭낙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숭낙이 발생하기 전에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급지시의 거절은 지급지시의 숭낙 전에 가능하다. 즉 지급지시가 숭낙되었다면 그 지급지시의 거절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일단 거절된 지급지시는 그 후에 다시 숭낙될 수 없다[U.C.C. §4A-210(d)]. 지급지시는 수신은행에 의하여 발신인에게 구두·전자식 또는 서면으로 거절의 통지가 전달됨으로써 거절된다. 거절의 통지는 특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수신은행이 그 지급지시를 거절한다거나 그 지급지시를 칩행 또는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표시하면 충분하다. 거절은 그 상황에서 합리적 방법에 의한 전송으로 통지가 발송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거절의 통지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발송되었을 경우에는 통지가 수령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인과 수신은행간에 지급지시의 거절방법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은 합리적이고, 그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은 그로 인해 통지의 수령이 상당히 지체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U.C.C. §4A-210(a)].

(3)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이 집행일에 지급지시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발신인의 수권계좌상 인출가능한 예금잔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지시를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신인이 집행일에 지급지시의 거절 통지를 받지 못하고 발신인의 수권계좌가 무이자일 경우, 동 은행은 집행일 이후 지급지시 취소일과 발신인이 지급지시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 중 빠른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한 지급지시액의 이자를 발신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당기간의 마지막 날은 경과일수에 산입한다. 해당기간 중 인출가능한 예금잔고가 지급지시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자액은 그에 따라 감액된다[U.C.C. §4A-210(b)].

(4) 수신은행이 지급을 정지[52]한 경우에는 동 은행이 수령하였으나 승낙하지 않은 모든 지급지시에 대하여 수신은행이 지급을 정지한 시점에 거절된 것으로 본다[U.C.C. §4A-210(c)]. 이는 수취인의 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가 시간의 경과로 승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Official Comment 4 to U.C.C. §4A-210].

4. 승낙되지 않은 지급지시에 관한 수신은행의 의무와 책임

수신은행이 명시된 약정에 의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는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 동 은행은 약정상 또는 통일상법전 제4A장에 규정된 범위에서 약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일상법전 제4A장 또는 명시된 약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급지시에 관하여 지급지시를 승낙할 의무가 있거나, 승낙 전의 어떠한 착위·부착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승낙에 기한 책임은 오로지 승낙이 이루어진 때에만 발생하고, 또한 책임은 통일상법전 제4A장에 규정된 바에 한정된다. 수신은행은 발신인이나 동 은행이 승낙하는 지급지시의 수취인 또는 동 자금이체의 어느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다.

또한 동 은행은 통일상법전 제4A장 또는 명시된 약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자금이체의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U.C.C. §4A-212].

52) 은행에 관한 지급정지란 은행이 감독당국에 의한 폐쇄명령, 법정관리, 영업정지 등으로 자금이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U.C.C. §4-104(a)(12) 참조).

제 3 절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에 의한 지급지시의 집행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동 지급지시를 집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먼저 집행과 집행일의 개념을 소개한 후에, 지급지시의 집행과 관련한 수신은행의 의무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1. 집행과 집행일

(1) 집행과 집행일(execution and execution date)이라는 용어는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에 대한 지급지시와 관련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수취인의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통일상법전 제4A장은 집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지급지시는 수신은행이 그 자신이 받은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도로 지급지시를 할 때 집행되며, 수취인의 은행이 받은 지급지시는 승낙될 수는 있어도 집행될 수는 없다[U.C.C. §4A-301(a)]. 지급지시의 승낙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이란 지급지시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신은행이 받은 지급지시를 이행하려는 행위와 관련된다. 즉 수신은행이 받은 지급지시와 일치하지 않는 지급지시를 하더라도 수신은행은 그가 받은 지급지시를 집행한 것이다. 예를 들면, 수신은행이 잘못하여 수취인 지정을 잘못하거나, 틀린 금액이나 틀린 수취인의 은행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한 경우에도 집행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그 집행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급지시의 誤履行과 관련하여 후술한다[Official Comment 1 to U.C.C. §4A-301].

(2) 지급지시의 집행일은 지급지시가 집행되어야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집행이 있었던 날과는 구별된다. 즉 지급지시의 집행일은 수신은행이 발신인의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 지급지시를 적절히 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집행일은 발신인의 지시로 정하여질 수 있지만, 지급지시가 수령된 날보다 빠를 수는 없으며, 달리 정하여 지지 않으면 지급지시가

수령된 날이다. 발신인이 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집행일은 지급일 또는 지급일에 수취인에게 지급이 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이전의 날이 된다[U.C.C. §4A-301(b)].

2. 지급지시의 집행과 관련한 수신은행의 의무

(1) 지급지시를 승낙한 수신은행은 집행일에 발신인의 지급지시와 일치하는 지급지시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자금이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하도록 한 중개은행 또는 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자금이체에 있어서 지급지시가 전송되어야 할 수단에 관한 발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뢰인의 은행이 중개은행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한 경우, 지급의뢰인의 은행은 지급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중개은행에 지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금이체에 있어서의 중개은행도 자신이 승낙한 지급지시의 발신인이 자신에게 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U.C.C. §4A-302(a)(1)]. 따라서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誤履行한 경우에는 지급지시에 대한 승낙은 발생하지만, 승낙에 따른 수신은행의 의무는 이행된 것이 아니다. 만일 수신은행이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도로 동 지급지시와 일치하는 지급지시를 한 경우에는 승낙과 동시에 집행의무가 이행된 것이다.

(2) 자금이체의 집행에 있어 이용될 중개은행과 자금이체시스템의 선택과 관련하여 수신은행이 발신인으로부터 달리 지시를 받지 않은 경우, 수신은행은 ⅰ)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ⅱ) 수취인의 은행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또는 수신은행이 중개은행의 선정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발신인의 지급지시가 신속하게 수취인의 은행에 이행될 수 있는 중개은행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자금이체시스템의 선택에 있어서는 발신인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수신은행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수신은행이 선의로 발신인의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발신인의 지시에 따르면 그 자금이체의 완료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동 수신은행은 동 자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용될 자금이체 시스템을 지정한 발신인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U.C.C. §4A-302(b)]. 그러나 발신인이 중개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신은행의 재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발신인의 중개은행의 지정은 수취인의 은행이 동 중개은행으로부터의 입금을 기대함을 의미하며, 기대되는 여신(중개은행이 발신인으로부터 지급 받기 이전에 수취인의 은행에 지급하는 경우)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Official Comment 2 to U.C.C. §4A-302].

(3) 자금이체의 집행에 있어 지급지시가 전송되는 수단과 관련하여 발신인이 동 자금이체를 전화 또는 전송이체에 의해 실행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동 자금이체를 기타 가장 신속한 수단에 의해 실행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신은행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지급지시를 전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중개은행에 대하여도 그에 따라 지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신인의 지시가 지급일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수신은행은 그 지급일 또는 가능한 한 그 날 이후 즉시 수취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기와 방법으로 자신의 지급지시를 전송해야 한다[U.C.C. §4A-302(a)(2)]. 위와 같은 경우[U.C.C. §4A-302(a)(2)]나 또는 수신은행이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신은행은 1종 우편 또는 그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급지시를 전송함으로써 지급지시를 이행할 수 있다. 만약 수신은행이 특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급지시를 전송함으로써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이행하도록 지시받았다면, 수신은행은 그 지시된 수단 또는 그와 동일한 정도의 신속한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지급지시를 할 수 있다[U.C.C. §4A-302(c)].

(4) 발신인이 지시하지 않는 한, 수신은행은 발신인의 지급지시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신인의 지급지시금액으로부터 제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지시함으로써 수수료 및 제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또한 그 후의 수신은행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지시해서도 안된다[U.C.C. §4A-302(d)].

제 4 절 지 급

1. 지급일

지급지시의 "지급일"이란 수취인의 은행이 지시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지급일은 발신인의 지시로 지정될 수 있으나, 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를 수령한 날 보다 이전으로 할 수 없으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급일은 지급지시를 수취인의 은행이 수령한 날이다[U.C.C. §4A-401]. 지급일은 수취인이 지시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날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하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어음교환소(Automated Clearing House : ACH) 이체방식에 있어서는 결제일 또는 효력발생일이 지급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지급일은 수취인의 은행에 대하여 하는 지급지시에 적용되지만,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에 하는 지급지시에도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자가 기재될 수 있고 이 경우 기재된 지급일은 수신은행이 발신인의 지시를 집행하여야 할 시간과 관련된다[Official Comment to U.C.C. §4A-401].

2. 수신은행에 대한 발신인의 지급의무

(1) 지급의무의 발생 등

수취인의 은행에 대하여 한 지급지시에 관하여 수취인의 은행이 그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발신인은 수취인의 은행에 그 지시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발신인의 지급기일은 지급지시상의 지급일까지이다[U.C.C. §4A-402(b)]. 또한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에 대하여 한 지급지시에 관하여 수신은행이 그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발신인은 수신은행에 그 지시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발신인의 지급기일은 지급지시상의 집행일까지이다.

그런데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지급지시를 수취인의 은행이 승낙하여 자금이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발신인의 지급의무는 면제되는데, 이러한 지급의무의 면제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U.C.C. §4A-402(c)(f)]. 이와 같이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지급지시를 수취인의 은행이 승낙하여 자금이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의뢰인은 자신의 지급지시에 대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하였다면 이자를 붙여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금반환보장(money-back guarantee)"은 지급의뢰인에 대한 중요한 보호장치이다. 지급의뢰인은 자금이체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에게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수취인에게 자금이 지급됨으로 인한 손실에 따른 위험은 지급의뢰인이 아니라, 그 다른 수취인을 지정한 은행측이 부담하는 것이다[Official Comment 2 to U.C.C. §4A-402].

지급지시의 발신인이 그 지시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에는, 지급수령은행은 발신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지급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경우(무권한 자금이체 또는 지급지시의 誤履行에 있어서 발신인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U.C.C. §4A-204, §4A-304])를 제외하고, 발신인은 그 지급일로부터 반환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U.C.C. §4A-402(d)]. 이러한 발신인의 권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U.C.C. §4A-402(f)].

자금이체가 위와 같이 수취인의 은행의 승낙에 의하여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및 중개은행이 지급반환의무를 지지만 법률이 허용하지 않거나 동 은행의 지급정지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동 중개은행을 통하여 자금이체를 하도록 하는 지시에 따라 지급지시를 이행한 자금이체의 발신인은 그가 승낙한 지급지시의 발신인으로부터 지급을 수령하거나 보유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동 중개은행을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지시를 한 자금이체상의 최초의 발신인은 중개은행에 지급한 은행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U.C.C. §4A-402(e)].

(2)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및 방법

가) 발신인의 지급시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ⅰ) 발신인이 은행인 경우에는, 수신은행이 연방준비은행 또는 자금이

체시스템을 통하여 채무의 최종결제대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ii) 발신인이 은행이고 또한 발신인에 있는 수신은행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은행에 있는 수신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입금액이 인출된 때 또는 인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금액이 인출가능하게 되고 수신은행이 그 사실을 안 날의 자정에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iii) 수신은행이 수신은행에 있는 발신인 계좌로부터 借記할 경우, 그 계좌에 있는 인출가능한 잔액으로부터 借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借記가 이루어진 때에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U.C.C. §4A-403(a)].

iv) 이 이외에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채무변제시기를 결정하는 법원칙에 의한다[U.C.C. §4A-403(d)].

나) 발신인과 수신은행이 참가자간의 채무를 다각적으로 차감계산하는 자금이체시스템의 회원인 경우, 수신은행은 그 결제가 그 시스템 규칙에 따라 완료되었을 때 최종결제를 받는다.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지급지시의 해당금액을 지급할 발신인의 의무는, 그 시스템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발신인의 의무를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수신은행에 의하여 발신인에게 전송된 다른 지급지시의 해당금액을 수신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을 발신인의 권리와 상계처리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 자금이체시스템에 있어서 각 발신인이 각 수신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총 잔액은, 그 시스템의 규칙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 잔액을 시스템의 다른 참가자가 그 발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총잔액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 따라서 총잔액은 위의 상계권이 행사된 이후에 확정된다[U.C.C. §4A-403(b)].

2개의 은행이 각각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당일 또는 다른 기간의 종료시점에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전송하는 경우, 일방의 은행에 의하여 전달된 모든 지급지시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합계금액은 다른 은행에 의하여 전달된 모든 지급지시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합계금액과 상계 된다. 그 상계의 범위 내에서 각 은행은 다른 은행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U.C.C. §4A-403(c)].

3. 수취인의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통지 및 지급의무

(1) 지급의무의 발생 등

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는 경우, 동 은행은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에게 지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기일은 지급지시상의 지급일이지만, 승낙이 동 은행의 자금이체 영업일 종료 후 지급일에 있게 되면 지급기일은 자금이체 영업일 다음 영업일까지이다. 수취인의 은행이 수취인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또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수취인은 동 은행이 그 손해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범위 내에서 지급거절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은행이 수취인의 지급수령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C.C. §4A-404(a)].

수취인의 이러한 지급수령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으로 변경할 수 없다[U.C.C. §4A-404(c)].

수취인의 은행이 승낙한 지급지시가 수취인의 계좌에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 동 은행은 지급일에 이은 다음 자금이체 영업일의 자정 전까지 동 지급지시의 수령을 수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지급지시가 수취인의 계좌로의 지급을 지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수취인의 은행은 동 지급지시가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수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 통지는 1종 우편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동 은행이 의무가 있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동 은행은 통지를 하여야 할 날부터 수취인이 동 은행에 의하여 지급지시가 수령된 것을 안 날까지의 지급지시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 은행은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동 은행은 이자지급청구가 있고 그에 관한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U.C.C. §4A-404(b)].

수취인의 이러한 통지 받을 권리는 수취인이 동의하거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다만 이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에 대하여는 자금이체 개시 전에 수취인이 알고 있어야 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U.C.C. §4A-404(c)].

(2)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및 방법

가) 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상의 수취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그 지급은 다음의 시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ⅰ) 수취인이 입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은 때이다.

ⅱ) 동 은행이 적법하게 그 입금액을 수취인의 채무에 충당하는 때이다.

ⅲ) 지급지시에 관한 자금을 동 은행이 그 밖의 방법으로 수취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때이다[U.C.C. §4A-405(a)].

ⅳ) 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상의 수취인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채무변제의 시기를 결정하는 일반사법에 의한다[U.C.C. §4A-405(b)].

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은 그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 자금이체의 수취인에 대한 지급에 대하여 수취인의 은행이 승낙한 지급지시에 따라 지급을 수령할 때까지는 잠정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규칙에 따라 잠정적인 지급을 한 수취인의 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수취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갖는다. 즉 ⅰ) 동 규칙이 자금이체가 개시되기 전에 수취인과 지급의뢰인 양자에게 잠정적인 지급의 성질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고, ⅱ) 수취인·수취인의 은행 및 지급의뢰인의 은행이 그 규칙에 따를 것을 합의하였으며, ⅲ) 수취인의 은행이 그가 승낙한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수취인이 수취인의 은행에 지급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수취인의 은행에 의한 지급지시의 승낙은 무효가 되고, 지급의뢰인의 수취인에 대한 어떠한 지급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U.C.C. §4A-405(d)].

다) 자금이체시스템(참가자간의 채무를 다각적으로 차감계산하고, 자신들의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가자들의 채무결제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참가자들간에 손실

분담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함)을 통하여 전송된 지급지시를 포함하는 자금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고 자금이체시스템이 자금이체 중 어떠한 지급지시에 대해서도 동 시스템 규칙에 따른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ⅰ) 수취인의 은행에 의한 승낙은 무효가 되고 그 승낙에 의하여 어느 누구도 권리나 의무를 갖지 못하며, ⅱ) 수취인의 은행은 수취인으로부터 지급한 금액의 반환청구권이 있고, ⅲ) 지급의뢰인의 수취인에 대한 어떠한 지급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ⅳ) 자금이체상의 각 발신인은 자금이체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신은행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U.C.C. §4A-405(e)].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금이체시스템이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 위의 경우[U.C.C. §4A-405(d)(e)]를 제외하고, 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에게 조건부로 지급한 경우 또는 동 은행이 지급지시상의 지급을 받지 못하면 수취인으로부터 지급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동 은행에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수취인과 합의하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조건이나 합의는 이행될 수 없다[U.C.C. §4A-405(c)]. 이는 수취인의 은행이 일단 승낙한 지급지시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발신인으로부터 자금을 받기 전에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경우 발신인의 지급불능에 대한 위험은 수취인의 은행이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Official Comment 2 to U.C.C. §4A-405].

4. 지급의뢰인의 수취인에 대한 지급(기본채무의 이행)

지급의뢰인의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언제 자금이체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가의 문제는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제6장) 중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 5 장 UNCITRAL Model Law上 資金移替의 法律關係

제 1 절 序 言

(1) UNCITRAL Model Law는 자금이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통일상법전 제4A장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4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제1장은 「적용범위와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은 「자금이체 당사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장은 「자금이체의 불이행·誤履行 또는 지연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4장은 「자금이체의 완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자금이체의 법률관계는 주로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제2장을 중심으로 UNCITRAL Model Law상 자금이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UNCITRAL Model Law는 발신은행(sending bank)과 수신은행(receiving bank)이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의 자금이체(credit transfers)에 대하여 적용되며, 은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지시의 이행을 일상업무의 일부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 은행의 지점과 독립사무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은행으로 본다[UNCITRAL Model Law §1(1)~(3)]. 또한 자금이체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동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UNCITRAL Model Law §4).

제 2 절 지급지시의 발행과 승낙

1. 지급지시의 발행 및 수령시기

(1) 지급지시(payment order)라 함은 다음의 경우에 일정액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을 수취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발신인이 수신은행에 대하여 하는 무조건의 지시를 말하는데, 그 방식을 묻지 아니한다. i) 수신은행은 발신인의 계좌로부터 借記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신

인으로부터 지급자금을 받음으로써 상환이 예정되어야 하고, ii) 그 지시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다만 수취인의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아니한 수취인을 위하여 동 은행이 수취인의 지급청구시까지 지급자금을 유보하도록 하는 지급지시는 무방하다)[UNCITRAL Model Law §2(b)].

발신인은 그 자신 또는 그가 수권한 자가 정당하게 지급지시 또는 이의 수정이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5(1)].

(2) UNCITRAL Model Law는 통일상법전 제4A장과는 달리 지급지시의 수령시기에 대하여 일반원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동 은행의 마감시간(cut-off time) 이후에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 날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UNCITRAL Model Law §11(5)].

2. 지급지시의 승낙

UNCITRAL Model Law는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통일상법전 제4A장과 같이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과 수취인의 은행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i) 발신인과 수신은행이 동 수신은행은 발신인으로부터 지급지시의 수령시 이를 집행한다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수신은행이 동 지급지시를 수령한 때에 동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ii) 수신은행이 발신인에게 동 지급지시의 승낙을 통지한 때에 동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iii) 동 수신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도로 다시 지급지시를 한 때에 동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iv) 동 수신은행이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동 수신은행에 있는 발신인의 계좌에서 지급금액을 借記한 때에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v) 지급지시의 거절통지기간 내에 거절통지 없이 동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UNCITRAL Model Law §7(2)].

(2) 수취인의 은행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i) 발신인과 동 은행이 동 은행은 발신인으로부터 지급지시의 수령시에 이를 집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동 은행이 그 지급지시를 수령한 때에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ii) 동 은행이 발신인에게 지급지시의 승낙의 통지를 한 때에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iii) 동 은행이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동 은행에 있는 발신인의 계좌에서 지급금액을 借記한 때에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iv) 동 은행이 지급지시에 따른 금액을 수취인의 계좌에 貸記하거나 그밖에 수취인이 그 자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때에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v) 동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가 그 자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거나 貸記한 금액을 이용할 수 있음을 통지한 때에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vi) 동 은행이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지시에 있는 대로 신용을 공여한 때에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vii) 동 은행이 법원 또는 관계기관의 명령에 따라서 수취인이 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신용을 공여한 때에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viii) 지급지시에 대한 거절통지 없이 거절통지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UNCITRAL Model Law §9(1)].

3. 지급지시의 거절

UNCITRAL Model Law는 수신은행(수취인의 은행을 포함한다)이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 거절통지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즉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아니한 수신은행은 늦어도 (지급지시의) 집

행기간[53]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발신인에게 거절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i) 동 수신은행에 있는 발신인의 계좌에서 借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동 계좌에 그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자금이 부족한 경우, ii)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에 따른 지급이 없는 경우, iii) 발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UNCITRAL Model Law §§7(3), 9(2)].

제 3 절 지급지시를 승낙한 은행의 의무

1.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의 의무

(1)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은 그가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그 지급지시에 따라서 이의 집행기간 내[54]에 수취인의 은행 또는 중개은행에 대하여 다시 동일내용의 지급지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8(2)].

(2) 동 수신은행은 발신인이 지정한 자금이체의 수행을 위한 중개은행 또는 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지급지시의 집행에 지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면, 지급지시의 집행기간 내에 수신은행이 발신인에게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문의한 후 위 (1)의 지급지시를 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8(3)].

(3) 동 수신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가 발신인은 확인되나 지급지시로서 내용이 불충분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수신은행은 지급지시의

53) 지급지시의 집행기간(execution period)이라 함은 지급지시가 집행될 수 있는 최초의 날을 始期로 하여 지급지시가 집행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終期로 하는 하루 또는 이틀의 기간을 말한다(UNCITRAL Model Law §2(k)).

54) 지급지시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수신은행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령한 영업일에 집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령일 이후의 날에 집행할 수 있다. i) 지급지시상에 이후의 날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날에 집행되어야 한다. ii) 지급지시상에 수취인이 처분가능한 자금이체일이 기재되고 또한 수취인의 은행이 이러한 지급지시를 승낙하기 위하여는 그 이후의 일정한 날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지급지시는 그 날에 집행되어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1(1)).

집행기간 다음 영업일까지 발신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8(4), 11(4)].

(4) 동 수신은행이 이체할 금액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음을 알게 되면, 동 은행은 발신인에게 지급지시의 집행기간 다음 영업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8(5), 11(4)].

2. 수취인의 은행의 의무

(1) 수취인의 은행은 그가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지급지시상의 지급일 또는 이러한 지급일에 승낙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수취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이체하거나, 그밖에 지급지시 및 수취인과 수취인의 은행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따라서 기타의 방법으로 수취인에게 신용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10(1)].

(2) 동 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가 발신인은 확인되나 지급지시로서 내용이 불충분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은행은 지급지시의 집행기간 다음 영업일까지 발신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0(2), 11(4)].

(3) 동 은행이 이체할 금액이나 수취인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음을 알게 되면, 동 은행은 발신인에게 지급지시의 집행기간 다음 영업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0(3)(4), 11(4)].

(4) 동 은행은 지급지시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동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수취인에게 동 은행은 그 수취인을 위하여 자금을 갖고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0(5)].

제 4 절 지 급

(1) 발신인의 지급의무는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한 때에 발생하며, 그 지급기일은 지급지시의 집행기간의 초일이다[UNCITRAL Model Law §5(6)]. 위와 같은 발신인의 수신은행에 대한 지급의무는 다음의 시점에서 이행한 것이 된다.

ⅰ) 수신은행이 동 은행에 있는 발신인의 계좌에서 지급자금을 借記하는 경우에는, 그 借記를 한 때이다.

ⅱ) 발신인이 은행이고 위 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신인이 동 은행에 있는 수신은행의 계좌에 지급지시금액을 입금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액이 사용된 때이고, 이 금액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신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의 다음 영업일이고, ⓑ발신인이 다른 은행에 있는 수신은행의 계좌에 지급지시금액을 입금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액이 사용된 때이고, 이 금액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신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의 다음 영업일이며, ⓒ수신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수신은행을 위하여 최종적인 결제를 한 때이며, ⓓ참가자간의 채무이행을 위한 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서 수신은행을 위하여 최종적인 결제가 있는 때이다[UNCITRAL Model Law §6].

(2) 자금이체는 수취인의 은행이 수취인을 위하여 지급지시를 승낙한 때에 완료한다. 자금이체가 완료된 때에는 수취인의 은행은 수취인에게 그가 승낙한 지급지시의 범위에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자금이체의 완료는 수취인과 수취인의 은행간의 그 이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UNCITRAL Model Law §19(1)].

수취인의 은행이 승낙한 지급지시금액이 수신은행들의 비용공제로 인하여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금액보다 적게 이체된 경우에도 자금이체는 완료된다. 수취인은 지급지시의 완료와는 별도로 지급의뢰인에 대하여 원인관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UNCITRAL Model Law §19(2)].

제 6 장 電子資金移替의 法律問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새로운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는 기존의 민사법이나 어음법·수표법의 유추적용만으로는 해결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전자자금이체에서의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및 이에 따른 법률문제), 지급지시의 취소와 수정, 무권한 자금이체(부정자금이체)에 따른 당사자간의 책임문제, 오류자금이체에 따른 당사자간의 책임문제, 지급지시의 이행지체·부적절한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간의 책임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이에 관하여는 통일상법전 제4A장, 전자자금이체법 및 UNCITRAL Model Law를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제 1 절 資金移替의 效力發生時期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서면자금이체의 경우와 같이 언제 자금이체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는 지급의뢰인에게는 지급지시를 취소할 수 없는 시기이며, 수취인에게는 동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는 지급의뢰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지급의뢰인 또는 수취인이 파산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55] 전자자금이체법의 경우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는 통일상법전 제4A장 및 UNCITRAL Model Law의 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통일상법전 제4A장

통일상법전 제4A장은 수취인의 은행에 의한 지급지시의 승낙을 기준으로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5) 同旨 : 한국외환은행, 前揭書(주 10), 15쪽.

즉 자금이체의 지급의뢰인은 그의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에게 ⅰ) 수취인의 이익을 위한 지급지시가 자금이체상의 수취인의 은행에 의해 승낙된 때에, ⅱ) 수취인의 은행이 승낙한 지급지시금액과 동액이고 지급의뢰인의 지시액보다 많지 않게 지급한 것이다[U.C.C. §4A-406(a)].

이와 같은 자금이체에 의한 지급이 지급의뢰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인 경우, 동 채무는 수취인에게 금전으로 동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는 것과 동일하게 소멸한다. 다만 ⅰ)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지급이 채무이행에 관하여 수취인과의 계약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ⅱ) 수취인이 수취인의 은행으로부터 동 지급지시의 수령을 통지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지급의뢰인에게 자신이 그러한 지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ⅲ) 지급지시에 관한 자금이 수취인에 의하여 인출되지 않았거나 수취인의 채무에 변제되지 않았고, ⅳ) 수취인에게 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면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지급의뢰인에 의한 지급이 채무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의뢰인은 수취인의 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취인의 권리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U.C.C. §4A-406(b)].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자금이체에 의하여 채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금액에서 자금이체상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신은행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지시를 승낙한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지급의뢰인의 지시액으로 본다. 다만 수취인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의뢰인이 수취인에게 공제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C.C. §4A-406(c)]. 수신은행은 발신인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발신인이 한 지급지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지시하여야 하므로[U.C.C. §4A-302(d)], 수신은행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지시를 승낙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지급의뢰인이 수수료의 공제를 승낙하는 지급지시를 하고 당사자간에 수수료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수신은행의 비용차감결과 일부 부족한 금액이 있음을 이유로 수취인이 지급의뢰인에 대하여 지급의 불완전이행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Official Comment 5 to U.C.C. §4A-406].

(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의뢰인의 수취인에 대한 지급과 관련한 지급의뢰인 또는 수취인의 권리는 지급의뢰인과 수취인간의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U.C.C. §4A-406(d)].

2. UNCITRAL Model Law

UNCITRAL Model Law는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통일상법전 제4A장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자금이체는 수취인의 은행이 수취인을 위하여 지급지시를 승낙한 때에 완료되며, 자금이체가 완료된 때에는 수취인의 은행은 지급지시를 승낙한 범위 내에서 수취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19(1)]. 자금이체는 하나 이상의 수신은행이 수수료를 공제함으로 인하여 수취인의 은행이 승낙한 지급지시의 금액이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의 금액보다 적은 때라도 완료된다[UNCITRAL Model Law §19(2)].

제 2 절 支給指示의 取消와 修正

1. 통일상법전 제4A장

(1) 지급지시의 취소와 수정의 방식에 관한 일반원칙

지급지시의 발신인이 그 지시를 취소 또는 수정하는 통지는 지급지시와 마찬가지로 구두·전자식 또는 서면으로 수신은행에 전달될 수 있는데, 보안절차(security procedure)[56]가 발신인과 수신은행 사이에 유효하게 합의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동 보안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나 또

56) 보안절차란 지급지시나 지급지시의 수정·취소의 통신이 고객의 것인지를 확인하고 지급지시나 통신의 내용상 또는 전달중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하여 고객과 수신은행간의 합의로 정한 절차를 말한다. 보안절차는 알고리즘(algorithms)이나 다른 암호·진정성을 확인하는 단어나 숫자·암호화·철회절차 기타 유사한 보안장치의 이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급지시나 통신상의 서명과 고객의 수권된 견본서명을 대조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보안절차가 아니다(U.C.C. §4A-201).

는 수신은행이 그 취소 또는 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그 취소 또는 수정의 통지는 유효하다[U.C.C. §4A-211(a)].

다만 통일상법전 제4A장에서 자금이체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권리와 책임은 지급지시를 받은 은행이 그 지급지시를 승낙함으로써 발생하고, 승낙의 효과는 그 지급지시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하여 하였느냐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은행에 대하여 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지급지시의 취소와 수정도 그 지급지시에 대한 수신은행의 승낙의 전후 및 그 지급지시를 승낙한 은행이 수취인의 은행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2)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기 전의 경우

지급지시의 취소 또는 수정의 통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수신은행에 부여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수신은행이 동 통지를 수령하면, 발신인이 하는 지급지시의 취소 또는 수정의 통지는 유효하여 동 지급지시를 취소·수정한다[U.C.C. §4A-211(b)].

(3)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한 후의 경우

가) 원칙적으로 수신은행이 동의하거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이 수신은행의 동의 없이 취소 또는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한, 지급지시의 취소·수정은 유효하지 않다. 이 경우 동 수신은행이 수취인의 은행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①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에 의해 승낙된 지급지시에 관하여는, 수신은행 자신이 한 지급지시도 동일하게 취소 또는 수정되지 않는 한 지급지시의 취소·수정은 유효하지 않다.

②수취인의 은행에 의하여 승낙된 지급지시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소·수정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동 지급지시가 권한 없는 지급지시의 집행에서 한 경우, 또는 자금이체에 있어서 발신인의 과실로 i) 이전에 발신인이 한 지급지시에 중복되거나 ii) 지급의뢰인으로부터 지급수령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iii) 수취인이 지급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지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지시가 취소 또는 수정되면, 수취인의 은행은 착오 및 원상회복을 규율하는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취인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을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를 갖는다[U.C.C. §4A-211(c)].

나)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은행이 지급지시의 승낙 후 발신인에 의한 지급지시의 취소 또는 수정에 동의할 경우 또는 수신은행의 동의 없이도 이의 취소 또는 수정을 허용하는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발신인은 그 취소 또는 수정의 효력 여하를 불문하고 그 취소나 수정 또는 시도된 취소 또는 수정의 결과로서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수신은행에 생긴 모든 손실과 비용을 수신은행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U.C.C. §4A-211(f)].

(4) 지급지시의 취소와 수정의 효력

취소된 지급지시는 승낙될 수 없다. 승낙된 지급지시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승낙이 무효로 되고, 누구도 그 승낙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지급지시의 수정은 수정시점에서 당초 지급지시를 취소하고, 동시에 수정된 내용의 새로운 지급지시를 한 것으로 본다[U.C.C. §4A-211(e)].

2. 전자자금이체법

전자자금이체법은 원칙적으로 지급지시의 취소 및 수정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사전수권이체[57]의 경우에만 소비자는 동 이체의 예정일자 3거래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이체지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은행은 소비자의 구두에 의한 이체지시취소의 경우에, 소비자가 구두통지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송부해야 한다는 점과 송부할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구두통지를 한 후 14일 내에 구두통지에 따른 서면확인서를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5 U.S.C.§1693 e(a)].

57) 미리 수권된 전자자금이체로서 실질적으로 정기적 주기마다 발생하는 이체를 말한다(15 U.S.C. §1693 a③).

3. UNCITRAL Model Law

(1) UNCITRAL Model Law의 경우 지급지시의 취소와 수정에 대하여 통일상법전 제4A장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취소 또는 수정의 허용여부를 수신은행의 승낙 전후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취소 또는 수정의 상대방이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이냐 또는 수취인의 은행이냐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가) 지급지시의 발신인은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는데, 이 취소 또는 수정은 지급지시의 사실상 집행시와 수신은행이 그 지급지시를 집행하여야 하는 초일 이전에 하여 수신은행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2(1)(12)].

나) 지급지시의 발신인은 수취인의 은행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는데, 이 취소 또는 수정은 수취인의 은행이 자금이체를 완료하기 이전과 이 자금을 수취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이체하기 이전에 하여 동 은행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2(2)(12)].

(2)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발신인과 수신은행은 발신인이 수신은행에 대하여 한 지급지시를 취소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하거나 또는 위의 취소 또는 수정시기보다 더 조기에 한 경우에만 그 지급지시의 취소 또는 수정이 유효한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UNCITRAL Model Law §12(3)(12)].

(3) 발신인과 수신은행 사이에 지급지시를 인증절차[58]에 따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지시의 취소 또는 수정도 이러한 인증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2(4)(12)].

(4) 지급지시를 집행하는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이나 이를 승낙하는 수취인의 은행은, 동 지급지시가 유효하게 취소 또는 수정된 경우

58) 인증절차(authentication)라 함은 "지급지시나 그 수정 또는 취소를 발신인으로 지정된 자가 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설정된 절차"(UNCITRAL Model Law §2(i))를 말하는데, 통일상법전 제4A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절차(security procedure)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에는 원래의 지급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할 권리가 없는데, 만일 동 은행이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은행으로부터 지급액을 반환받아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2(5)(12)].

(5) 발신인이나 지급의뢰인의 사망·지급정지·파산 또는 무능력은 그 자체로는 지급지시를 취소 또는 수정하는 것이 되거나 발신인의 수권을 종료시키지 아니한다[UNCITRAL Model Law §12(11)(12)].

제 3 절 無權限 資金移替(不正資金移替)

1. 통일상법전 제4A장

전자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자금이체를 지시하거나 또는 정당하게 지급지시된 내용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통일상법전 제4A장은 보안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무권한 자금이체 및 착오에 의한 지급지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무권한 자금이체에 따른 손실부담은 보안절차가 유효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보안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의 손실부담에 대하여 알아보고, 무권한 자금이체에 따른 지급반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지급지시의 신뢰성을 보안절차에 따라 확인하기로 고객과 은행이 합의한 경우

가) 은행과 고객이 발신인으로서 고객명의로 은행에 한 지급지시의 진정성을 보안절차에 따라 확인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ⅰ) 그 보안절차가 수권되지 않은 지급지시에 대하여 안전성을 지키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고 ⅱ) 은행이 그 지급지시를 선의로 승낙하고 또한 보안절차 및 고객명의로 된 지급지시의 승낙을 제한하는 어떠한 서면합의나 지시에 따라 그 지급지시를 승낙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수신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는 수권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의 지시로서 유효하다[U.C.C. §4A-201, 202(b)]. 즉 고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보안절차의 상업적 합리성의 개념은 매우 유동적인데, 이는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드는 인건비나 설비비용이 반영하는 안전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일상법전 제4A장은 보안절차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하여 "은행에 표시한 고객의 요구, (고객이 보통 은행에 한 지급지시의 규모, 형태 및 빈도를 포함하여) 은행에 알려진 고객의 사정, 고객에 제시된 대체 보안절차 및 유사한 상황에 있는 고객과 수신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안절차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법률상의 문제"라고 규정하고[U.C.C. §4A-202(c) 전단], 또한 "은행이 고객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보안절차를 제시하였으나 고객이 이를 거부한 후에 고객에 의하여 보안절차가 선택되었고, 고객이 자기의 명의로 (지급지시를) 하고 자신이 선택한 보안절차에 따라 은행이 승낙한 모든 지급지시에 대하여는 수권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서면으로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U.C.C. §4A-202(c) 후단].

은행은 보안절차의 준수뿐만 아니라, 고객명의로 된 지급지시의 승낙을 제한하는 어떠한 서면합의나 고객의 지시도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은 은행으로 하여금 수권된 계좌로부터 지급될 수 없는 지급지시, 고객의 특정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지급지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지시 또는 고객이 은행에 제공한 수취인 명단에 없는 수취인에 대한 지급지시 등은 승낙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은 보안절차 자체에 통합될 수도 있고 별도의 약정이나 지시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은행은 그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Official Comment 3 to U.C.C. §4A-203].

은행이 위의 요건을 준수하여 무권한 자금이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책임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합의에 따른다[U.C.C. §4A-203(a)(1)]. 따라서 은행이 수권 되지 않은 지급지시에 관한 모든 손실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고, 고객과 은행이 약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분담할 수도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에 대한 면책조항[U.C.C. §4A-202(b)]의 효과는 수신은행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진정성

을 확인한 후에 승낙한 지급지시가 정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 손실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인데, 만약 고객이 무권한 자금이체의 발생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고객이 그 지급지시가 i) 지급지시 또는 보안절차에 관하여 항상 고객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가 수탁되어 있는 자 또는 ii) 고객의 전송시설을 관리하는 자나, 고객이 지배하는 자료로부터 또한 수신은행의 수권 없이 보안절차에 위반하는 자료를 얻은 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그 자료가 어떻게 하여 얻어졌는가 또는 고객에 과실이 있었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수신은행은 당해 지급지시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거나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U.C.C. §4A-203(a)(2)].

합리적인 보안절차를 위반하기 위해서는 위조를 하는 자가 동 절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코드나 확인장치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보안절차를 위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송기구에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비밀정보는 고객이 관리하는 자료나 수신은행이 관리하는 자료로부터 얻어지는데, 만일 고객이 위조자가 그 비밀정보를 고객의 대리인이나 이전의 대리인 또는 고객이 관리하는 자로부터 얻은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손실은 은행으로 전가된다[Official Comment 5 to U.C.C. §4A-203].

다) 은행이 보안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조항[U.C.C. §4A-202(b)]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어, 결국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안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2) 지급지시의 신뢰성을 보안절차에 따라 확인하기로 고객과 은행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

수신은행이 수신한 지급지시는 발신인으로 확인된 자가 그 지급지시를 수권하거나 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지급지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수권된 지시가 된다[U.C.C. §4A-202(a)]. 따라서 고객과 은행간에 보안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의 법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예컨대 수신은행이 자신의 고객인 기업에 의하여 쓰여진 것

으로 보이는 문자로 작성되고 또 그 기업의 임원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지급지시를 집행하였다고 가정하자. 그 서명이 임원의 것이고 그 임원이 회사를 위해 지급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 경우 또는 표현책임(apparent authority)이나 금반언(estoppel)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지급지시를 한 고객이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Official Comment 1 to U.C.C. §4A-203].

그러나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지급지시의 전달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진실성이 실제로 보안절차에 의하여 검증되므로, 고객과 은행간에 보안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어 대리의 법리가 이에 적용되는 예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고객과 은행간에 보안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고 은행이 동 보안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적용될 것이다.

(3) 수령한 지급금액의 반환과 무권한 자금이체에 대한 고객의 통지의무

수신은행이 발신인인 고객의 명의로 발행된 지급지시를 승낙하였으나 그것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 제4A-202조(수권되고 진정성이 확인된 지급지시)에 따라 수권되거나 고객의 지시로 유효하지 못하고, 또는 ii) 제4A-203조(확인된 지급지시로서 지급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신은행은 그가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 한도까지 고객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에 대하여 수령한 지급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은행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U.C.C. §4A-204(a) 본문]. 그러나 고객이 그 지급지시가 자기에 의하여 수권되지 않았음을 판단함에 있어 통상의 주의를 해태하고 또한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그 지급지시가 승낙되었거나 또는 그 지급지시에 관하여 고객의 계좌로부터 借記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지함에 있어 통상의 주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고객은 반환받을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청구할 권리가 없다[U.C.C. §4A-204(a) 단서]. 이

때에 상당한 기간은 보통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수신은행이 반환하여야 할 채무는 합의에 의하여 달리 변경될 수 없다[U.C.C. §4A-204(b), §1-204].

(4) 무권한 자금이체에 관한 규정의 강제성

자금이체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통일상법전 제4A장에서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당사자의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U.C.C. §4A-501(a)]. 그러나 무권한 자금이체의 경우 수신은행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무권한 자금이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가능한 경우[U.C.C. §4A-203(a)(1)]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어떠한 권리·의무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U.C.C. §4A-202(f), 204(b)].

2. 전자자금이체법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은 소비자가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현금카드 등을 상실한 경우에 소비자의 책임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 즉 i) 금융기관이 무권한 전자자금이체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통지를 받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 후에는, 소비자는 「미화 5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ii) 그러나 금융기관이 무권한 전자자금이체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통지를 받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기 전에는, 소비자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서 취득된 금액이나 재산 또는 용역의 가치」에 대하여 책임은 진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의 책임은 「미화 500불」 또는 소비자가 현금카드 등의 분실 또는 도난을 안 후 2 거래일 후 금융기관에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무권한 자금이체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때에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정기명세표(periodic statement)를 발송한 후 소비자가 60일 내에 정기명세표에 나타나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 또는 계좌오류를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소비자가 자기의 현금카드 등의 분실 또는 도난을 안 후 2거래일 내에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15 U.S.C. § 1693 g(a)].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고[15 U.S.C. § 1693 g(b)], 소비자는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15 U.S.C. § 1693 g(c)].

3. UNCITRAL Model Law

UNCITRAL Model Law의 경우도 무권한 자금이체의 손실분담에 대하여 통일상법전 제4A장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지급지시나 그 수정 또는 취소가 인증절차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발신인이 지급지시나 그 수정 또는 취소를 (실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인증절차가 그 상황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수신은행이 그 인증절차에 따라서 행위를 하였다면, 고객(지급지시의 명의인)이 손실을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 5(2)].

그러나 고객이 수신은행은 무권한 지급지시를 고객의 현직이나 전직의 피용자 또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인증절차를 담당하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수신은행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 때에 수신은행이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인증절차를 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지시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지급지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 5(4)].

제 4 절 誤謬資金移替

1. 통일상법전 제4A장

통일상법전 제4A장은 오류자금이체의 유형을 ⅰ) 착오에 의한 지급지시, ⅱ) 수취인의 기재오류, ⅲ)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의 오기,

ⅳ) 지급지시의 誤執行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류의 지급지시

가) 승낙된 지급지시가 보안절차에 따라 송부되었으나, 그 지급지시가 ⅰ) 발신인에 의해 의도되지 않았던 수취인에 대한 지급으로 잘못 지시한 경우, ⅱ) 발신인에 의해 의도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을 잘못 지시한 경우, ⅲ) 이미 발신인이 한 지급지시와 동일한 지급지시를 잘못하여 중복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의 책임이 정하여진다. 즉 지급지시의 발신인측(발신인 또는 발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59])이 보안절차를 준수하였고, 수신은행이 보안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착오를 발견하였을 것을 발신인이 입증하면, 발신인은 그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금이체가 위 ⅰ) 또는 ⅲ)에 규정된 오류의 지급지시에 기초하여 완료되었을 경우 발신인은 그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고 수신은행은 수취인으로부터 착오 및 원상회복에 관한 법(law governing mistake and restitution)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취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반환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자금이체가 위 ⅱ)에 규정된 지급지시에 기초하여 완료되었을 경우 발신인은 발신인이 의도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수취인이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수신은행은 수취인으로부터 착오 및 원상회복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수취인이 수령한 초과금액을 반환청구할 권리를 갖는다[U.C.C. § 4A-205(a)].

나) ⅰ) 오류의 지급지시의 발신인이 위 가)의 경우와 같이 그 지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또한 ⅱ) 발신인이 수신은행으로부터 그 지시가 동 은행에 의하여 승낙되었거나 또는 그 지시에 관하여 발신인의 계좌로부터 借記되었음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발신

59) 발신인이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에 전송하기 위하여 자금이체시스템 또는 다른 제3자 전송시스템에 전송한 경우, 그 시스템은 수신은행에 대한 지급지시의 전송을 위한 발신인의 대리인으로 보는데(U.C.C. § 4A-206(a)), 이 때의 이러한 시스템이 발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통상의 주의로써 그 지급지시에 관한 오류를 발견하여 그가 동 은행의 통지를 수령한 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동 은행에 그 관련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동 은행이 발신인의 이러한 주의의무의 해태를 입증하는 경우, 발신인은 동 은행이 그 의무를 해태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입증한 손해를 동 은행에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발신인의 이러한 책임은 발신인의 지급지시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U.C.C.§4A-205(b)].

다) 위의 사항은 지급지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에서 지급지시의 수정에도 적용되고[U.C.C.§4A-205(c)], 오류의 지급지시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통일상법전에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변경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U.C.C. §4A-501(a)].

(2) 수취인의 기재오류

가) 수취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취인의 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상의 수취인 성명, 은행계좌번호 또는 기타 수취인의 동일성 확인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나 계좌인 경우에는, 누구도 동 지급지시의 수취인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또한 동 지급지시의 승낙은 발생할 수 없다[U.C.C. §4A-207(a)].

나) 수취인의 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의 이름과 은행계좌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ⅰ) 수취인의 은행이 수취인의 이름과 그 번호가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을 모른 경우에는, 그 번호를 그 지급지시의 수취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취인의 은행은 그 이름과 번호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U.C.C. §4A-207(b)(1)].

그런데 ⓐ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고,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의 기재가 그 이름 및 번호에서 불일치하고, ⓒ수취인의 은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번호에 의하여 확인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에는, 지급의뢰인이 은행인 경우에는 지급의뢰인은 그 지급지시에 따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지급의뢰인이 은행이 아니고 또한 지급의뢰인이 그 번호에 의하여 확인된 자가 지급의뢰인으로부터 지급을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뢰인은 그 지급지시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지급의뢰인의 은행이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를 승낙하기 전에 지급의뢰인은 그가 한 지급지시의 지급이 수취인의 은행에 의하여 비록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와 다른 자일지라도 비밀번호 또는 은행계좌번호에 기초하여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관한 증명은 모든 허용가능한 증거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다. 지급의뢰인의 은행은 그 지급지시가 승낙되기 전에 지급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정보를 기재한 문서에 서명하였음을 입증하면,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U.C.C. §4A-207(c)].

위의 경우에 수취인의 은행이 번호에 의해 확인된 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였는데 그가 지급의뢰인으로부터 지급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때에는, 수취인의 은행은 그 지급금액을 착오 및 원상회복에 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반환 받을 수 있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의뢰인이 그 지급지시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의뢰인에게 이의 반환청구권이 있고, ⓑ지급의뢰인이 은행이 아니고 또한 그 지급지시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의뢰인의 은행이 이의 반환청구권이 있다[U.C.C. §4A-207(d)].

ii) 수취인의 은행이 이름으로 확인된 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그 이름과 번호가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임을 안 경우에는, 수취인의 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은 자가 동 자금이체의 지급의뢰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수취인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누구도 수취인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면 그 지급지시의 승낙은 발생할 수 없다[U.C.C. §4A-207(b)(2)].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취인의 은행이 손실을 부담한다.

위의 i) 및 ii)는 은행들이 비밀번호나 은행계좌번호로 수취인을 확인하는 표준형식에 따라 지급지시를 판독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하

여 자금이체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은행들이 이러한 자동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Official Comment 2 to U.C.C. §4A-207].

(3)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의 오기

가) 비밀번호만으로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을 지정하는 지급지시의 경우

수신은행은 그 번호로써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번호가 은행을 표시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발신인은 수신은행에 대하여 동 지급지시를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하려고 함에 있어서 동 수신은행이 그 번호를 신뢰한 결과 입은 모든 손실 및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U.C.C. §4A-208(a)].

나) 이름과 비밀번호의 두 가지에 의하여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을 지정하는 지급지시로서 그 이름과 번호가 다른 자(은행)로 나타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신은행이 동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악의)와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 따라 책임관계가 달라진다.

①수신은행이 악의인 경우에는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함에 있어 이름을 신뢰하였든 번호를 신뢰하였든 발신인의 지급지시와 일치하는 지급지시를 할 의무 및 자금이체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용되어야 하는 중개은행·자금이체시스템 또는 지급지시가 전송되어야 할 수단에 관하여 발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U.C.C. §4A-302(a)(1)]를 위반한 것이다[U.C.C. §4A-208(b)(4)].

②수신은행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신은행이 이름 또는 번호 중 어느 것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ⅰ) 수신은행은 발신인이 은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할 시점에 이름과 번호가 다른 자를 가리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의 적절한 표시로 이름을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신은행은 그 이름과 번호가 동일인을 가리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U.C.C. §4A-208(b)(3)].

ii) 수신은행이 번호를 신뢰하는 경우에는 다시 발신인이 은행인 경우와 은행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발신인이 은행인 경우에는 수신은행이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하는 시점에 그 이름과 번호가 다른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수신은행은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의 적절한 표시로 그 번호를 신뢰할 수 있다. 수신은행은 그 이름과 번호가 동일인을 나타내는지 또는 그 번호가 은행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발신인은 수신은행에 대하여 동 지급지시를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하려고 함에 있어서 수신은행이 그 번호를 신뢰한 결과 입은 모든 손실 및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U.C.C. §4A-208(b)(1)].

ⓑ발신인이 은행이 아니고, 또한 수신은행이 발신인의 악의(지급지시가 승낙되기 전에 비록 번호가 이름으로 표시된 은행과 다른 자를 가리킨다 할지라도 수신은행이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의 적절한 표시로서 그 번호를 신뢰할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를 증명한 경우에는, 발신인이 은행인 경우와 같이 발신인이 손실을 부담한다[U.C.C. §4A-208(b)(2)].

(4) 지급지시의 誤執行

가) 발신인의 지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급지시를 함으로써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하거나, 또는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급지시를 한 후 다시 중복하여 지급지시를 한 수신은행은, 동 자금이체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발신인의 지급지시액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동 은행은 착오 및 원상회복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잘못된 지급지시의 수취인으로부터 그 수령한 초과지급액을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다[U.C.C. §4A-303(a)].

나) 발신인의 지시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지시를 함으로써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한 수신은행은, 동 은행이 발신인의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의 이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급지시를 함으로써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러한 두 개의 지급지시에 의한 자금이체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

우에는, 발신인의 지급지시금액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의 지급지시를 한 자는 오류의 지급지시액의 한도 내에서만 그가 송낙한 지급지시의 발신인으로부터 지급을 수령 또는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수신은행이 발신인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지급 받기 위하여 발신인의 지급지시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지시를 하여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U.C.C. §4A-303(b)].

다) 수신은행이 발신인의 지급지시상의 수취인과 다른 수취인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함으로써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하고 그 오류에 기초하여 자금이체가 완료된 경우에는, 잘못 집행된 지급지시의 발신인과 그 자금이체의 모든 前발신인은 그들이 한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다. 오류의 지급지시를 한 자는 착오 및 원상회복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지급지시의 수취인으로부터 수령한 지급금액을 반환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U.C.C. §4A-303(c)].

라) 誤履行된 지급지시의 발신인이 수신은행으로부터 그 지급지시가 이행되었거나 또는 그 지급지시에 관하여 발신인의 계좌에서 借記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발신인은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통상의 주의로써 지급지시가 誤履行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관계사실을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통지 받은 날 이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동 은행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발신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 수신은행은 발신인에게 반환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신이 誤履行을 인식하기까지 기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동 은행은 통지의무를 발신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신인으로부터 어떠한 배상을 받을 권리는 없다[U.C.C. §4A-304].

2. 전자자금이체법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은 오류가 되는 자금이체, 오류의 정정절차, 오류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오류가 되는 자금이체

이에 해당하는 자금이체는 ①무권한 전자자금이체, ②소비자의 계좌로부터 또는 소비자의 계좌에 한 부정확한 전자자금이체, ③소비자의 계좌와 전자자금이체의 정기명세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누락, ④금융기관에 의한 계산상 오류, ⑤전자단말기로부터의 소비자의 부정확한 금액의 수령, ⑥전자자금이체나 기장에 관하여 소비자가 전자자금이체법이 요구하는 추가정보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⑦기타 위원회규칙(규칙 E)에 규정된 오류이다[15 U.S.C. § 1693f(f)].

(2) 오류의 정정절차

가) 소비자가 電子端末機로써 한 매 전자자금이체에 대하여 그러한 소비자의 계좌를 가진 금융기관은 그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직접·간접으로 그러한 이체가 이루어진 소비자의 계좌·금액 및 일자 등이 기재된 서면문서를 소비자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한다[15 U.S.C. § 1693d(a)].

또한 금융기관은 각 소비자에게 전자자금이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 소비자의 각 계좌에 대한 정기명세표를 송부하여야 하는데, 동 명세표는 그 계좌에 관계되는 전자자금이체가 매월 또는 그보다 단기의 주기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매월, 또는 아무리 그보다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도 3개월마다 송부하여야 한다[15 U.S.C. § 1693d(c)].

나) 금융기관이 동일지급의뢰인으로부터 미리 수권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적어도 매 60일에 1회 貸記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소비자의 계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은 그 선택에 의하여 그 貸記가 계획대로 된 경우에 위원회의 규칙(규칙 E)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즉시 적극적으로 통지하던가 또는 그 貸記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소극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5 U.S.C. § 1693d(b)].

다) 금융기관이 위와 같이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문서를 송부하거나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 소비자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자기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이 자기를 알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계좌에 오류가 있다는 뜻과 그 오류금액을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15 U.S.C. § 1693f(a)①~③].

라) 금융기관이 위의 통지를 수령한 경우에는 동 금융기관은 주장된 오류를 조사하여 그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러한 조사 및 결정의 결과를 10거래일 내에 소비자에게 보고하거나 우송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구두통지를 하고 또 소비자가 이 때에 서면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하는 사실 및 송부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오류의 구두통지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10거래일 내에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5 U.S.C. § 1693f(a)③].

마) 금융기관이 위의 주장된 오류를 조사하여 오류의 발생을 인정하면 이를 인정한 후 1거래일 내에 해당 오류를 정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를 貸記하여야 한다[15 U.S.C. § 1693f(b)].

금융기관이 소비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오류의 통지를 받으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후 10거래일 내에 주장된 오류금액(필요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을 소비자의 계좌에 잠정적으로 再貸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잠정적으로 再貸記된 자금을 소비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때에도 오류의 발생유무나 금액확정은 그 후의 조사 및 결정에 맡겨지는데, 이러한 조사는 오류통지의 수령 후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15 U.S.C. § 1693f(c)].

바) 금융기관이 주장된 오류를 조사한 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결정하면 그 조사의 결정 후 3거래일 내에 소비자에게 발견사항의 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우송하여야 하고, 또한 소비자가 요구하면 금융기관이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결정하는데 근거한 일체의 서류의 등본을 소비자에게 즉시 교부하거나 우송하여야 한다[15 U.S.C. § 1693f(d)].

(3) 금융기관의 책임

금융기관이 주장된 오류에 대하여 선의의 조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소비자의 계좌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데에 상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오류의 통지를 받은 후 10거래일 내에 소비자의 계좌에 잠정적인 再貸記를 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조사시에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고의로 소비자의 계좌에 오류가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소비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입은 실제의 손해에 대하여 3배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15 U.S.C. § 1693f(e)].

3. UNCITRAL Model Law

(1) 지급지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발신인은 원칙적으로 수신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잘못된 이중지급지시·지급지시의 내용상 오류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이하 '지급지시의 오류 등'으로 약칭함)에 발신인과 수신은행이 지급지시의 오류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합의하였으며, 수신은행이 그러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지급지시의 오류 등이 밝혀지거나 밝혀졌을 것인 경우에는 발신인은 그러한 지급지시의 오류 등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 수신은행이 조사하였어야 할 오류나 불일치가 발신인이 의도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면, 발신인은 의도된 금액의 한도에서만 의무를 부담한다. 지급지시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의 발신인의 의무는 그 지급지시의 수정이나 취소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UNCITRAL Model Law § 5(5)].

(2) 수신은행이 집행한 지급지시의 금액이 그가 공제한 수수료는 별도로 하고 송낙한 지급지시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수신은행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지급지시를 할 의무가 있다[UNCITRAL Model Law § 15]. 자금이체가 완료되었지만 수신은행이 집행한 지급지시의 금액이 그가 송낙한 지급지시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수신은행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취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반환 받을 권리를 가진다[UNCITRAL Model Law § 16].

제 5 절 支給指示의 履行遲滯, 부적절한 履行 또는 不履行에 대한 責任

1. 통일상법전 제4A장

신속·저비용으로 대변되는 기계적인 처리시스템인 전자자금이체의 속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수료체계하에서 은행이 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들이 이 서비스를 과중한 결과책임을 부담함이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 사실 소액의 수수료를 위해 거액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를 거래를 취급할 은행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통일상법전 제4A장은 지급지시의 부적절한 이행 등에 따른 결과책임을 은행에 대하여 묻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Official Comment 2 to U.C.C. §4A-305].

(1) 자금이체가 완료되었으나 수신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지급이 지체(이행지체)되었을 경우, 동 은행은 그 자금이체의 지급의뢰인 또는 수취인에 대하여 그러한 이행지체의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U.C.C. §4A-305(a)].

수신은행이 그의 의무에 위반하여 지급지시를 이행한 결과 자금이체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급의뢰인이 지정한 중개은행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지급지시를 한 경우에는, 동 수신은행은 지급의뢰인에 대하여 위의 이행지체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이체에 따른 비용 및 그러한 부적절한 이행에 의하여 생긴 부수적인 비용과 금리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U.C.C. §4A-305(b)].

이행지체 및 부적절한 이행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 추가하여, 수신은행의 명시적인 서면약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 손해를 포함한 그 밖의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U.C.C. §4A-305(c)].

(2) 수신은행이 명시된 약정에 의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는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불이행), 수신은행은 발신인에게 그 거래비용 및 동

불이행으로 인한 부수적인 비용과 이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도 수신은행의 명시된 서면약정에 규정된 범위에서 결과적인 손해를 포함한 추가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배상 받을 수 없다[U.C.C. §4A-305(d)].

(3) 위 (1)의 이행지체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 제기 이전에 동 청구가 거절된 경우에는, 상당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위 (2)의 수신은행의 합의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는데 그 합의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이행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 제기 이전에 동 청구가 거절된 경우에는 상당한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U.C.C. §4A-305(e)].

(4)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행지체 및 부적절한 이행에 따른 수신은행의 책임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U.C.C. §4A-305(f)].

2. 전자자금이체법

전자자금이체법은 부적절한 자금이체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책임범위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①금융기관이 소비자(고객)가 지시한 정확한 금액과 방법으로 계좌의 조건에 따라서 전자자금이체를 하지 않은 경우, ②금융기관이 소비자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켰더라면 이체에 충분한 자금이 되었을 경우에, 금융기관이 계좌의 조건에 따라 貸記를 하지 않아서 자금이 충분하지 않게 되어 전자자금이체를 하지 못한 경우, ③금융기관이 계좌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정지를 하도록 지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시에 따른 지급정지를 하지 않고 차변이체를 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15 U.S.C.§1693h(a)].

(2)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①고객의 계좌에 자금이 불충분하거나, 고객의 계좌에 있는 자금이 법적 절차의 진행중이거나 기타 그러한 이체를 제한하는 채무가 있거나, 고객의 계좌에서 그러한 이체를 하게 되면 약정된 신용한도를 초과하거나, 전자단말기에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 위원회의 규칙(규칙 E)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②금융기관이 지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그러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고 또 그 상황이 요구하는 그러한 주의를 다한 경우, ③고객이 전자자금이체를 하고자 하는 때에 또는 차변이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체가 발생했어야 하는 때에 고객이 알고 있는 기계의 기능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15 U.S.C. § 1693h(a)① 단서, (b)].

(3) 금융기관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금융기관이 위 (1)의 사유에 의하여 고객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전자자금이체의 불이행(지급정지의 경우에는 전자자금이체의 이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고객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15 U.S.C. § 1693h(a)].

그러나 금융기관의 그러한 자금이체지시의 불이행이 고의가 아니고 또 선의의 과실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과실을 피하는데 적합한 상당한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입증된 「실제의 손해」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15 U.S.C. § 1693 (c)].

(4) 고객의 채무이행의 중지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이체지시를 불이행한 사유 중 기계의 기능정지로 인한 경우이고, 또 고객의 채권자가 그러한 전자자금이체에 의하여 지급의 수령을 동의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고객의 채무는 기계의

기능정지가 보수되어 전자자금이체가 완성될 때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그 채권자가 전자자금이체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5 U.S.C. § 1693 j].

3. UNCITRAL Model Law

(1)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의 경우

가)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은 그가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동 지급지시에 따라서 이의 집행기간 내에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에 대하여 동 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의 내용과 일치하고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이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시를 포함하는 지급지시를 다시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UNCITRAL Model Law § 8(2)], 동 수신은행이 이러한 의무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자금이체를 이행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책임을 진다. 이 때의 수신은행의 책임은 그 불일치한 이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이행지체기간 동안의 지급지시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 지체가 지급지시금액의 일부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수신은행의 책임은 그 지체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UNCITRAL Model Law § 17(1)].

나) 위 가)에 의한 수신은행의 책임은 그의 수신은행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수취인에 대하여 직접 지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수취인이 아닌 수신은행이 이러한 이자의 지급을 받으면 동 은행은 그 이자를 그 다음 수신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수신은행이 수취인의 은행인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 17(2)].

다) 지급의뢰인이 위 가) 및 나)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뢰인은 이를 책임 있는 수신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고, 책임 없는 수신은행의 경우에도 그가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의뢰인과 같이 이를 책임 있는 수신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UNCITRAL Model Law § 17(3)].

(2) 수취인의 은행의 경우

수취인의 은행은 그가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수취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이체하거나 그밖에 지급지시 및 수취인과 수취인의 은행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따라서 기타의 방법으로 수취인에게 신용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UNCITRAL Model Law §10(1)], 수취인의 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과 동 은행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취인에게 책임을 진다[UNCITRAL Model Law §17(6)].

(3)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은행의 책임의 증감

위 (1) 및 (2)의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어느 은행의 다른 은행에 대한 책임이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을 감소시키는 합의는 은행의 표준거래약관에 포함될 수 있다. 은행은 은행이 아닌 지급의뢰인 또는 수취인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킬 것을 합의할 수 있으나, 그 지급의뢰인 또는 수취인에 대한 책임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특히 은행은 이자율을 확정하는 합의에 의하여 그의 책임을 감소시킬 수 없다[UNCITRAL Model Law §17(7)].

제 7 장 結 語

제 1 절 電子資金移替法의 必要性

(1)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각 금융기관을 통한 전자자금이체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데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에 예기치 않았던 전혀 새로운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중 은행지로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금융결제원이 제정한 「지로업무규약」 및 「지로업무시행세칙」이 있으나 이는 지로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각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은행 등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약관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관한 분쟁해결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1978년에 이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자금이체법」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었고, 또 1989년에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장을 신설하여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도 지급이체에 관한 모범법을 제정하여 각국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종권이 없는 자금이체(전자자금이체)에 따른 새로운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는 점에서나 또는 이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다는 점에서도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ⅰ) 다양한 형태의 모든 전자자금이체(대량이체를 위한 전자자금이체 및 소비자가 이용하는 각종의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ⅱ)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고객(소비자)의 보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ⅲ) 새로운 형태의 전자자금이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4A장 및 전자자금이체법과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지급이체에 관한 모범법을 참고하여 우리의 전자자금이체법(안)을 미흡하나마 제시하여 이에 관한 논의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電子資金移替法(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각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5 U.S.C. §1693(b) 참조].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전자자금이체"란 서면자금이체 이외의 자금이체로서, 지급의뢰인이 전자단말기·카드·컴퓨터 또는 자기테이프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의 借記나 貸記를 지시하거나 授權하여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처리를 말한다. 이러한 전자자금이체는 자동출납기이체(ATM)·販賣店頭端末機移替(POS)·자동교환소(ACH)를 통한 대변이체(直接預置)나 차변이체(既授權借記) 및 전화에 의한 이체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는다[15 U.S.C. §1693a⑥; U.C.C. §4A-104(a) 참조].

②"전자단말기"란 지급의뢰인 등이 사용하는 전화 이외의 것으로 이에 의하여 지급의뢰인 등이 전자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전자기구를 의미한다. 이는 자동출납기 및 판매점두단말기 등을 포함하는데, 이에 한하지 않는다[15 U.S.C. §1693a⑦ 참조].

③"금융기관"이란 지급의뢰인 또는 수취인 등의 계좌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갖고 있어 전자자금이체가 가능한 은행 등을 말한다[15 U.S.C. §1693a⑧ 참조].

④"지급지시"란 발신인이 수신은행에게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전자식으로 지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수신은행은 발신인의 계좌를 借記하거나 발신인으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그 대금을 상환받는다[UNCITRAL Model Law §2(b); U.C.C. §4A-103(a)(1) 참조].
⑤"수취인"은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에서 전자자금이체의 결과로서 자금을 수령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하는데, 보통 그의 거래은행(수취인의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다[UNCITRAL Model Law §2(d); U.C.C. §4A-103(a)(2) 참조].
⑥"지급의뢰인"은 전자자금이체에서 최초의 지급지시의 발신인이다[UNCITRAL Model Law §2(c); U.C.C. §4A-104(c) 참조].
⑦"발신인"은 지급의뢰인 및 발신은행을 포함하여 수신은행에게 지급지시를 보내는 자를 말한다[UNCITRAL Model Law §2(e); U.C.C. §4A-103(a)(5) 참조].
⑧"수신은행"이란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수령하는 은행이다[UNCITRAL Model Law §2(f); U.C.C. §4A-103(a)(4) 참조].
⑨"중개은행"이란 지급의뢰인의 은행 및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을 말한다[UNCITRAL Model Law §2(g); U.C.C. §4A-104(b) 참조].
⑩"고객"이란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거나 은행이 그로부터 지급지시를 수령하기로 합의한 자를 말하는데, 은행을 포함한다[U.C.C. §4A-105(a)(3) 참조].
⑪"은행"이란 전자자금이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하는데, 동일은행의 지점이나 독립된 영업소는 이 법의 적용에서 별개의 은행으로 본다[UNCITRAL Model Law §§1(3), 8(6), 11(7); U.C.C. §4A-105(a)(2) 참조].
⑫"(전자)자금이체시스템"이란 유선전송 네트워크, 자동화된 어음교환소, 또는 어느 은행이 발송한 지급지시가 다른 은행에 전송될 수 있는 교환소나 기타 은행협회의 통신시스템을 말한다[U.C.C. §4A-105(a)(5) 참조].

⑬"인증절차"란 지급지시 또는 이의 수정이나 취소가 발신인으로 확인된 자가 하였는지 여부와 지급지시의 전달이나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한 절차를 말한다[UNCITRAL Model Law §2(i); U.C.C. §4A-201 참조].

제 3 조 (조건부 지급지시)

①은행이 조건부 지급지시를 수령하고 무조건의 지급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은행은 지급지시의 발신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그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은 정당한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으로 인정된다[UNCITRAL Model Law §3(1) 참조].

②본 법은 은행이 수령한 조건부 지급지시의 집행시기 및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조건부 지급지시의 발신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UNCITRAL Model Law §3(2) 참조].

제 2 장 당사자의 의무

제 4 조 (발신인의 의무)

①발신인은 그 자신 또는 그가 授權한 자가 정당하게 지급지시 또는 이의 수정이나 취소(이하 '지급지시 등'으로 약칭함)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5(1) 참조].

②지급지시 등이 인증절차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발신인은 제1항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i) 그 인증절차가 그 상황에서 무권한 지급지시를 방지하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한 (ii) 수신은행이 그 인증절차에 따라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지급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5(2); U.C.C. §4A-202(b) 참조].

③제2항의 경우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발신인의 현직·전직 피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령하거나 또는 발신인과의 관계에서 인증절차를 담당하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령하였음을 발신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은 그 지급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신은행이 발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인증절차를 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지시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발신인은 그 지급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5(4); U.C.C. §4A-203(a)(2) 참조].

④지급지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발신인은 원칙적으로 수신은행이 수신한 지급지시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무권한 지급지시·잘못된 이중지급지시·지급지시의 내용상 오류나 불일치(이하 '지급지시의 오류 등'으로 약칭함)가 있는 경우에, (ⅰ) 발신인이 인증절차를 준수하였고 (ⅱ) 수신은행이 인증절차를 준수할 경우 지급지시의 오류 등이 밝혀지거나 밝혀졌을 것인 경우에는, 발신인은 그러한 지급지시의 오류 등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때 수신은행이 조사하여야 할 오류나 불일치가 발신인이 의도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면, 발신인은 의도된 금액의 한도에서만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5(5); U.C.C. §4A-205(a); 15 U.S.C. §1693f(f) 참조]. 발신인이 수신은행으로부터 오류 등이 있는 지급지시가 송낙되었다는 것 또는 그러한 지급지시에 기하여 발신인의 계좌를 借記하였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발신인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후 90일 내의 상당한 기간 내에 통상의 주의로써 그러한 오류 등을 발견하여 수신은행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발신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신은행의 손해를 발신인의 지급지시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U.C.C. §4A-205(b) 참조]. 수신은행이 발신인의 지급지시의 오류 등에 대하여 선의의 조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발신인의 지급지시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데에 상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수신은행이 조사시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경우에 수신은행이 고의로 발신인의 지급지시에 오류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수신은행은 발신인이 입은 모든 손해와 비용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15 U.S.C. §1693f(e) 참조].

⑤발신인은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그 지급지시에 따른 금액을 수신은행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5(6); U.C.C. §4A-402(b)(c) 참조]. 이 때 수신은행이 수취인의 은행이면 발신인은 지급지시금액을 지급지시상의 지급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수신은행이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은행이면 지급지시상의 칩행일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U.C.C. §4A-402(b)(c) 참조].

제 5 조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에 의한 지급지시의 승낙 또는 거절)

①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은 지급지시를 칩행하는 때에 이를 승낙하는 것이다[U.C.C. §4A-209(a) 참조]. 이 때 수신은행은 그가 받은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도로 다시 지급지시를 하는 때에 지급지시를 칩행하는 것이다[U.C.C. §4A-301(a) 참조].

②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ⅰ) 발신인과 동 수신은행이 동 수신은행은 발신인으로부터 지급지시의 수령시 이를 칩행한다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동 수신은행이 그 지급지시를 수령한 때;

(ⅱ) 동 수신은행이 발신인에게 승낙의 통지를 한 때;

(ⅲ) 동 수신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도로 다시 지급지시를 한 때;

(ⅳ) 동 수신은행이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동 수신은행에 있는 발신인의 계좌에서 지급금액을 차기한 때;

(ⅴ) 지급지시의 거절통지기간 내에 거절통지 없이 동기간이 경과한 때[UNCITRAL Model Law §7(2) 참조].

③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칩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영업일까지 이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동 수신은행에 있는 발신인의 계좌에서 借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동 계좌에 그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자금이 부족한 경우;

(ii)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에 따른 지급이 없는 경우;

(iii) 발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UNCITRAL Model Law §7(3) 참조].

④이때의 지급지시가 본 조에 의하여 이의 집행기간의 종료일 제5 영업일 영업시간까지 승낙되지도 않고 또 거절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지시는 효력을 잃는다[UNCITRAL Model Law §7(4) 참조].

제 6 조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의 의무)

①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은 그가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그 지급지시에 따라서 이의 집행기간 내에 수취인의 은행 또는 중개은행에 대하여 다시 동일내용의 지급지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8(2); U.C.C. §4A-302(a) 참조].

②동 수신은행은 발신인이 지정한 자금이체의 수행을 위한 중개은행 또는 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지급지시의 집행에 지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면, 수신은행은 지급지시의 집행기간 내에 발신인에게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문의한 후 제1항에 따른 지급지시를 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8(3); U.C.C. §4A-302(b) 참조].

③동 수신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가 발신인은 확인되나 지급지시로서 내용이 불충분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수신은행은 지급지시의 집행기간 다음 영업일까지 발신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8(4), 11(4) 참조].

④동 수신은행이 이체할 금액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음을 알게 되면, 동 은행은 발신인에게 지급지시의 집행기간 다음 영업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8(5), 11(4) 참조].

제 7 조 (수취인의 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 또는 거절)

①수취인의 은행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이다:

(i) 발신인과 동 은행이 동 은행은 발신인으로부터 지급지시의 수

령시 이를 집행한다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동 은행이 그 지급지시를 수령한 때;

(ii) 동 은행이 발신인에게 승낙의 통지를 한 때;

(iii) 동 은행이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동 은행에 있는 발신인의 계좌에서 지급금액을 借記한 때;

(iv) 동 은행이 지급지시에 따른 금액을 수취인의 계좌에 貸記하거나 그밖에 수취인이 그 자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때;

(v) 동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가 그 자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거나 貸記한 금액을 이용할 수 있음을 통지한 때;

(vi) 동 은행이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지시에 있는 대로 신용을 공여한 때;

(vii) 동 은행이 법원 또는 관계기관의 명령에 따라서 수취인이 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신용을 공여한 때;

(viii) 지급지시에 대한 거절통지 없이 거절통지기간이 경과한 때[UNCITRAL Model Law §9(1) 참조].

②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지시의 집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영업일까지 이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수취인의 은행에 있는 발신인의 계좌에서 借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동 계좌에 그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자금이 부족한 경우;

(ii)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에 따른 지급이 없는 경우;

(iii) 발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UNCITRAL Model Law §9(2) 참조].

③이때의 지급지시가 본 조에 의하여 이의 집행기간의 종료일 제5 영업일 영업시간까지 승낙되지도 않고 또 거절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지시는 효력을 잃는다[UNCITRAL Model Law §9(3) 참조].

제 8 조 (수취인의 은행의 의무)

①수취인의 은행은 그가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지급지시상의 지급일 또는 이러한 지급일에 승낙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수취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이체하거나, 그밖에 지급지시 및 수취인과 수취인의 은행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따라서 기타의 방법으로 수취인에게 신용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10(1); U.C.C. §4A-404(a) 참조].

②동 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가 발신인은 확인되나 지급지시로서 내용이 불충분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은행은 지급지시의 집행기간 다음 영업일까지 발신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0(2), 11(4) 참조].

③동 은행이 이체할 금액이나 수취인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음을 알게 되면, 동 은행은 발신인에게 지급지시의 집행기간 다음 영업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0(3)(4), 11(4) 참조].

④동 은행은 지급지시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동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수취인에게 동 은행은 그 수취인을 위하여 자금을 갖고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0(5) 참조].

제 9 조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집행하고 통지할 기간)

①지급지시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수신은행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령한 영업일에 집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령일 이후의 날에 집행할 수 있다.

(ⅰ) 지급지시상에 이후의 날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날에 집행되어야 한다.

(ⅱ) 지급지시상에 수취인이 처분가능한 자금이체일이 기재되고 또한 수취인의 은행이 이러한 지급지시를 승낙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일정한 날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지급지시는 그 날에 집행되어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1(1) 참조].

②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이의 수령일 다음 영업일에 집행하는 경우에는, 수신은행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일 현재의 가격으로 집행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1(2) 참조].

③수신은행이 집행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송낙이 의제되어 지급지시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지시를 수령한 날과 다음의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ⅰ) 수신은행에 있는 발신인의 계좌에서 借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지급지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 날;

(ⅱ)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있은 날[UNCITRAL Model Law §11(3) 참조].

④수신은행의 마감시간 이후에 지급지시를 수령한 수신은행은 그 지급지시를 다음 날 수령한 것으로 보아 다음 날 이를 집행할 수 있다[UNCITRAL Model Law §11(5) 참조].

제10조 (수취인의 기재오류)

①수취인의 은행이 수령한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의 성명·은행계좌번호 또는 기타 인적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도 그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 지급지시의 송낙은 무효가 된다[U.C.C. §4A-207(a) 참조].

②수취인의 은행이 수취인의 성명과 은행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인 것임을 모른 경우, 동 은행은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으로 확인된 자의 은행계좌번호에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수취인의 은행은 그 성명과 은행계좌번호가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U.C.C. §4A-207(b)(1) 참조]. 이 경우 수취인의 은행은 제4항에 의하여 지급의뢰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고, 지급의뢰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으면 지급의뢰인의 은행에 상환청구할 수 있다[U.C.C. §4A-207(d) 참조].

③수취인의 은행이 수취인의 성명만을 확인하여 지급하거나 수취인의 성명과 은행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인 것을 안 경우에는, 누구도 수취인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수취인의 은행이 이체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도 수취인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면 지급지시의 송낙은 무효이다[U.C.C. §4A-207(b)(2) 참조].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급지시가 송낙되고,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불일치하며, 또한 수취인의 은행이 제2항에 의하여 계좌번호에 의하여 확인된 자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의뢰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ⅰ) 지급의뢰인이 은행인 경우에는, 지급지시상의 자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ⅱ) 지급의뢰인이 은행이 아닌 경우로서 그가 그 계좌번호에 의하여 확인된 자가 지급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지시상의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U.C.C. §4A-207(c) 참조].

제11조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의 기재오류)

①지급지시에서 특정번호만으로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신은행은 그 번호만으로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을 확인할 수 있고, 발신인은 수신은행에 대하여 그 지급지시를 집행하거나 집행하려고 함에 있어 수신은행이 그 번호를 신뢰함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실 및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U.C.C. §4A-208(a) 참조].

②지급지시에서 이름과 특정번호로 중개은행이나 수취인의 은행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이름과 번호가 다른 자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ⅰ) 발신인이 은행이면 수신은행은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하는 때에 그 이름과 번호가 다른 자를 나타내는 것을 모른 경우에는,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으로서 그 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 때 수신은행은 그 이름과 번호가 동일인을 나타내는지 여부 및 그 번호가 은행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발신인은 수신은행에게 그 지급지시를 집행하거나 집행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 번호를 신뢰함으로써 입은 모든 손실 및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ii) 발신인이 은행이 아니고 또한 수신은행이 발신인은 그 지급지시가 승낙되기 전에 비록 그 번호가 이름으로 표시된 은행과 다른 자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수신은행이 그 번호에 의하여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발신인 및 수신은행의 권리와 의무는 (i)과 같다.

(iii) 발신인이 은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신은행은 그가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하는 때에 그 이름과 번호가 다른 자를 나타내는 것임을 모른 경우에는, 그 이름에 의하여 중개은행 또는 수취인의 은행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수신은행은 그 이름과 번호가 동일인을 타나내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iv) 수신은행이 그 이름과 번호가 다른 자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함에 있어 그 이름이나 번호를 신뢰하는 것은 수신은행의 의무위반이 된다[U.C.C. §4A-208(b) 참조].

제12조 (지급지시의 취소와 수정)

①지급지시의 발신인은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 이 취소나 수정은 지급지시의 사실상 집행기간과 본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신은행이 그 지급지시를 집행하여야 하는 초일 이전에 하여 수신은행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2(1); U.C.C. §4A-211(a)(b) 참조].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은행이 승낙한 지급지시는 동 은행이 동의하거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동 은행이 한 지급지시도 동일하게 취소 또는 수정되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있다[U.C.C. §4A-211(c)(1) 참조].

②지급지시의 발신인은 수취인의 은행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는데, 이 취소 또는 수정은 수취인의 은행이 전자자금이체를 완료하기 이전과 자금이 수취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이체

되기 이전에 하여 동 은행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2(2); U.C.C. §4A-211(a)(b) 참조]. 수취인의 은행이 승낙한 지급지시는 동 은행이 동의하거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그 지급지시가 무권한 지급지시의 집행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발신인의 착오로 중복지급지시·수취인 오기 또는 금액과다의 지급지시의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지시의 취소 또는 수정은 유효하다[U.C.C. §4A-211(c)(2)1문 참조].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발신인과 수신은행은 발신인이 수신은행에 한 지급지시를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취소시기보다 더 조기에 수령한 경우에만 그 지급지시의 취소 또는 수정이 유효한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UNCITRAL Model Law §12(3) 참조].

④발신인과 수신은행 사이에 지급지시를 인증절차에 따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지급지시의 취소 또는 수정도 이러한 인증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2(4); U.C.C. §4A-211(a) 참조].

⑤지급지시를 집행하는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은행이나 이를 승낙한 수취인의 은행은, 동 지급지시가 유효하게 취소 또는 수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지급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할 권리가 없는데, 만일 동 은행이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은행으로부터 지급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2(5); U.C.C. §4A-211(c)(2)2문 참조].

⑥반환금의 수령인이 지급의뢰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수령인은 반환금을 발신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자기의 발신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이전의 발신인에게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 내에서 반환한 은행과 이전의 발신인 이후의 모든 은행은 면책된다[UNCITRAL Model Law §12(6)(7)(9) 참조].

⑦본조에 의하여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지급의뢰인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할 의무가 있는 모든 은행에 대하여 동 은행이 이미 반환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의무가 있는 은행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의뢰인에게 직접 반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의 채무를 면한다[UNCITRAL Model Law §12(8)(9) 참조].

⑧자금이체가 완료되었으나 수신은행이 유효한 자금이체의 취소나 수정에 따라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동 수신은행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수취인으로부터 이체된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UNCITRAL Model Law §12(10) 참조].

⑨승낙되지 않은 지급지시는 지급지시상의 집행일 또는 지급일 후 수신은행의 제5 영업일의 영업시간 종료시점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U.C.C. §4A-211(d) 참조].

⑩취소된 지급지시는 승낙될 수 없다. 승낙된 지급지시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승낙은 무효가 되어 누구도 그 승낙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못한다. 지급지시의 수정은 수정시점에서 원래의 지급지시를 취소하고 새로운 지급지시를 한 것으로 본다[U.C.C. §4A-211(e) 참조].

⑪지급지시는 발신인 또는 지급의뢰인의 사망·파산·무능력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하거나 발신인의 授權이 종료되지 않는다[UNCITRAL Model Law §12(11); U.C.C. §4A-211(8) 참조].

제 3 장 자금이체의 불이행·誤履行 또는 지연의 효과

제13조 (자금이체의 불이행)

①자금이체가 이행되지 않으면 지급의뢰인의 은행은 지급의뢰인에게 그로부터 수령한 모든 자금에 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 및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뢰인의 은행 및 그 후의 수신은행은 그의 수신은행에 지급한

자금에 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 및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UNCITRAL Model Law §14(1); U.C.C. §4A-305(d)(e)]. 그러나 지급의뢰인의 은행 등이 그가 지배할 수 없는 불가항력 등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의뢰인 등은 이자 및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15 U.S.C. §1693h(a)① 단서, (b) 참조].

②지급의뢰인의 은행 등의 제1항의 의무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중한 지급의뢰인의 은행이라면 그 자금이체에서 오는 중대한 위험으로 인하여 특정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NCITRAL Model Law §14(2) 참조].

③수신은행이 그가 자금을 이체한 중개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법률에 의한 반환금지로 인하여 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반환의무가 없다[UNCITRAL Model Law §14(3) 참조].

④발신인에 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은행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의 발신인에게 직접 자금을 반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와 그 이전의 발신인 이후의 모든 은행이 반환할 의무를 면한다[UNCITRAL Model Law §14(4)(6) 참조].

⑤본조에 의하여 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지급의뢰인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할 의무가 있는 모든 은행에 대하여 동 은행이 사전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반환할 채무가 있는 은행은 그가 지급의뢰인에게 직접 반환하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자금이체시스템 규칙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다른 모든 은행이 반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면책된다[UNCITRAL Model Law §14(5)(6) 참조].

제14조 (자금이체의 誤履行)

①수신은행이 집행한 지급지시의 금액이 그가 공제한 수수료는 별도로 하고 승낙한 지급지시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은행은 차액

에 해당하는 지급지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15; U.C.C. §4A-303(b) 참조].

②수신은행이 집행한 지급지시의 금액이 그가 승낙한 지급지시의 금액보다 큰 경우로서 지급지시가 완료된 때에는, 동 은행은 수취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UNCITRAL Model Law §16; U.C.C. §4A-303(a) 참조].

③수신은행이 그의 의무에 위반하여 지급의뢰인 등의 지급지시의 내용과 달리 지급지시를 한 경우에는, 동 은행은 지급의뢰인 등에 대하여 이에 따른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C.C. §4A-305(b) 참조].

제15조 (자금이체의 지연)

①수신은행이 그의 의무에 위반하여 자금이체를 지연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지연기간만큼 지급지시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 지연이 지급지시금액의 일부에만 있는 경우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17(1); U.C.C. §4A-305(a) 참조].

②제1항에 의한 수신은행의 책임은 지연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자기의 수신은행에 지급하거나 또는 수취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면책된다. 수취인이 아닌 수신은행이 이의 지급을 받으면 다음 수신은행에 이를 이전하고, 다음 수신은행은 수취인의 은행에 이전하고, 수취인의 은행은 수취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UNCITRAL Model Law §17(2) 참조].

③지급의뢰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의뢰인은 이를 책임 있는 수신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책임 없는 수신은행이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의뢰인과 같이 책임 있는 수신은행에 대하여 이를 상환청구할 수 있다[UNCITRAL Model Law §17(3) 참조].

④수신은행이 그의 의무에 위반하여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지급유예기간동안 그의 발신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수취인의 은행이 그의 의무에 위반하여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의 발신인에게 지급일로부터 통지한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UNCITRAL Model Law §17(4)(5) 참조].

⑤수취인의 은행은 그가 본 법에 규정된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수취인과 동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책임을 진다[UNCITRAL Model Law §17(6) 참조].

⑥본 조의 책임은 은행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증감할 수 있다. 은행은 은행이 아닌 지급의뢰인이나 수취인과의 합의로 그의 책임을 증대시킬 수는 있으나, 감소시킬 수는 없다[UNCITRAL Model Law §17(7) 참조].

제 4 장 자금이체의 완료

제16조 (자금이체의 완료)

①자금이체는 수취인의 은행이 수취인을 위하여 지급지시를 승낙한 때에 완료한다. 자금이체가 완료된 때에는 수취인의 은행은 수취인에게 그가 승낙한 지급지시의 범위에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자금이체의 완료는 수취인과 수취인의 은행간의 그 이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UNCITRAL Model Law §19(1) 참조].

②수취인의 은행이 승낙한 지급지시금액이 수신은행들의 비용공제로 인하여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금액보다 적게 이체된 경우에도 자금이체는 완료된다. 수취인은 지급지시의 완료와는 별도로 지급의뢰인에 대하여 원인관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UNCITRAL Model Law §19(2) 참조].

제17조 (수취인의 은행의 지급채무의 이행시기와 이행범위)

①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의 계좌에 貸記한 경우 동 은행의 지급채무는 (ⅰ) 수취인이 입금한 금액을 인출한 권리가 있음을 통지 받거나, (ⅱ) 동 은행이 그 입금액을 수취인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ⅲ) 동 은행이 수취인에게 지급지시에 따른 자금을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때와 그 범위에서 이행된 것으로 본다[U.C.C. §4A-405(a) 참조].

②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의 계좌에 貸記하지 않은 경우 동 은행의 지급채무의 이행시기는 채무변제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의 규정에 의한다[U.C.C. §4A-405(b) 참조].

제18조 (지급의뢰인의 수취인에 대한 기본채무의 이행)

①자금이체의 지급의뢰인은 그의 지급지시상의 수취인에게 (ⅰ) 수취인의 은행이 수취인을 위하여 지급지시를 승낙하는 때에, (ⅱ) 지급의뢰인이 지급의뢰한 금액범위 내에서, 수취인의 은행이 승낙한 지급지시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U.C.C. §4A-406(a) 참조].

②지급의뢰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의뢰인의 채무는 수취인에게 동액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소멸한다. 다만 (ⅰ) 제1항에 의한 지급이 그 채무에 관하여 수취인과의 계약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ⅱ) 수취인의 은행이 지급지시의 수령의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이 지급의뢰인에게 수취인의 지급거절을 통지하였으며, (ⅲ) 지급지시에 따른 자금이 수취인에 의하여 인출되지 않았거나 수취인의 채무에 충당되지 않았고, (ⅳ) 수취인이 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다면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의뢰인에 의한 지급이 본 조에 의한 채무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의뢰인은 수취인이 수취인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U.C.C. §4A-406(b) 참조].

제5장 보 칙

제19조 (당사자간의 약정의 효력)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 규칙에 의한다[U.C.C. §4A-501(a)(b) 참조].

제20조 (수신은행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①수신은행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동 은행에 있는 발신인의 계좌의 잔액은 동 은행이

그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는 한 그 지급지시금액만큼 감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수신은행에게 지급지시를 승낙하기 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C.C. §4A-502(b) 참조].

②수취인의 은행이 동 은행에 있는 수취인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급지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ⅰ) 수취인의 은행은 수취인의 계좌에 그 금액을 貸記할 수 있는데, 貸記된 금액은 동 은행이 수취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과 相計되거나 또는 동 은행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동 은행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수 있다;

(ii) 수취인의 은행은 그 금액을 수취인의 계좌에 貸記하고 이의 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계좌에 대한 채권의 강제집행절차가 수취인의 은행에게 인출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수취인의 계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있는 경우에도 수취인의 은행이 이에 대처할 상당한 기회를 가진 경우에는 동 은행은 지급지시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동 강제집행절차의 수행과 무관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C.C. §4A-502(c) 참조].

③지급의뢰인의 수취인에 대한 자금이체의 목적으로 하는 지급과 관련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는 수취인의 은행이 수취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어서 수취인의 은행에 대하여 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그 밖의 은행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는 그 효력이 없다[U.C.C. §4A-502(d) 참조].

제21조 (지급지시의 금지명령)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ⅰ) 자금이체를 위한 지급지시를 금할 수 있거나, (ii) 지급의뢰인의 은행에 대하여 지급의뢰인의 지급지시를 집행하는 것을 금할 수 있거나, 또는 (iii) 수취인의 은행이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수취인이 그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U.C.C. §4A-503 참조].

제22조 (복수의 지급지시)

수신은행이 발신인으로부터 그의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복수의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 동 은행은 그 복수의 지급지시에 관하여 어떠한 순서에 의하여도 발신인의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다[U.C.C. § 4A-504(a) 참조].

제23조 (고객의 이의 배제)

수신은행이 고객명의의 지급지시에 관하여 지급을 받고 이를 송낙하였으며 또한 고객이 그 지급지시를 확인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객은 동 은행이 그 지급자금을 보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고객이 지급지시의 확인통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지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C.C. § 4A-505 참조].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단행본〉

全國銀行聯合會, 「美·日의 金融自由化와 銀行經營」, 1986.
鄭東潤, 「어음·手票法(四訂版)」, 서울: 法文社, 1996.
鄭燦亨, 「第3改訂版 어음·手票法講義」, 서울: 弘文社, 1999.
崔基元, 「어음·手票法」, 서울: 博英社, 1996.
한국외환은행, 「새로운 은행업무와 법률문제」(법규자료: 조법-47), 1984.
한국은행, 「우리 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0.

〈논문 및 자료〉

鄭敬永, "미국 통일상법전 4A편상의 지급지시에 관한 연구", 「현대상법의 과제와 전망」(松淵梁承圭敎授華甲記念), 서울: 三知院, 1994.
鄭燦亨, "美國의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商事法硏究」(檀也徐廷甲博士古稀紀念特輯), 제4집(1986).
鄭燦亨, "電子資金移替制度", 「韓國金融法硏究」, 제4집(1991).
鄭熙喆, "Giro制度가 有價證券制度에 미치는 影響", 「法學」(서울大), 제26권 1호(1985.4).
한국은행, "2002. 6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보도자료」, 2002.

2. 외국 문헌

〈단행본〉

American Law Institute and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Uniform Commercial Code, 1999.

Bailey, Henry J., *Brady on Bank Checks*, 5th ed.(1979).

Hume, Linda S., *Payment Systems* (Problems and Material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88.

Whaley, Douglas J., *Problems and Materials on Negotiable Instruments*, Little, Brown & Co., 1981.

〈논문 및 자료〉

Budnitz, Mark E., "Federal Regulation of Consumer Disputes in Computer Banking Transactions", 20:3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35-37(1983).

Ellinger, E. P., "The Giro System and Electronic Transfers of Funds",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1986.

Ellis, Nan S., "The Uniform New Payments Code : Highlights of Proposed Changes in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s 3 and 4", 23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617(1986).

Geva, Benjamin, "The Concept of Payment Mechanism", 24:1 *Osgoode Hall Law Journal* 3-6(1986).

Lingl, Herbert F., "Risk Allocation in International Interbank Electronic Fund Transfers: CHIPS & SWIFT", 22:3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621-661(Fall, 1981).

Tauber, Joe, "The Emergence of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Consumer Protection, Federal Antitrust, and Branch Banking Laws", 10 *Ohio Northern University L. Rev.* 323(1983).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 1992.

Vergari, James V., "Article 3 and 4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in an Electronic Fund Transfer Environment", 17 *Sandiego Law Review* 288(1980).